



2016 해외수산협력원
국제수산협상 연간 백서

세계 바다 곳곳에서 신 해양 가치를 창출하고
대한민국을 해양수산 강국으로 이끄는 데
조력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요 상업어종의 자원남획 방지를 위한 국제 규제 및 연안국의 EEZ 입어조건 강화와 더불어 공해조업 등에 있어 국가 간 협력과 책임있는 어업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연안국의 조업 규제 강화, 어선원 구인난,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원양어업의 성장세 둔화 및 생산력 저하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어업질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원양어업의 안정적인 조업보장과 책임있는 원양조업국으로서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우리 해외수산협력원에서는 2012년 8월 협상전문관 제도를 도입하여 협상관들이 일년간 참여한 협상 결과, 조업규제상황들을 한눈에 파악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국제수산협상 연간백서를 2014년부터 발간하여 정부, 기관 및 업·단체와 공유한 바 있습니다.

2016년 3회째 발간되는 본 백서가 현안에 대한 객관적 사실과 다양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작성된 만큼 향후 원양산업을 쉽게 이해하는데 좋은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백서 발간을 위해 힘써주신 관계자 분들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16. 12.

한국원양산업협회 해외수산협력원장

최경삼



2016년 해외수산협력원 연대표

1 January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 제4차 연례회의
한-에콰도르 SECA 제1차 협상

2 February

제34차 아태지역수산위원회 회의
한중미 FTA 제3차 협상

3 March

제33차 FAO 아태지역 총회 회의
한-에콰도르 SECA 제2차 협상
남인도양수산협정(SIOFA) 제1차 과학위원회
제1차 국가관할권 이원영역 해양생물다양성(BBNJ) 관련 준비위원회

4 April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이행위원회 제4차 작업반 회의
제117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산위원회 회의
ASEAN 해양 관련 국가별 단일연락창구에 관한 ARF 워크숍

5 May

제6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 해양수산실무그룹 회의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제13차 이행위원회 및 재정행정 회의
NPAFC 제24차 연례회의
IUU어업 및 관련범죄 근절을 위한 국제 세미나

6 June

제90차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ATTC) 연례회의
한-이스라엘 FTA 제1차 협상

7 July

남인도양수산협정(SIOFA) 제3차 당사국회의
제32차 유엔농업식량기구 수산위원회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전자어획증명제도 워크숍

8 August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제2차 정기회의
한-호주 TPP 기술협의
제2차 국가관할권 이원영역 해양생물다양성(BBNJ) 관련 준비위원회

9 Septemb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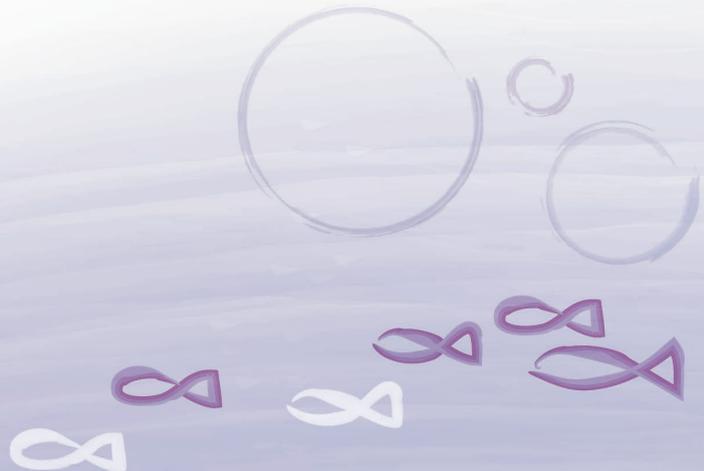
뱀장어보존관리 비공식회의
북대서양수산위원회(NAFO) 제38차 연례회의
제7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 해양수산실무그룹 회의

10 October

제90차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ATTC) 속개 연례회의
제118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산위원회 회의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제35차 연례회의
국제포경위원회(IWC) 제66차 총회

12 December

한-이스라엘 FTA 제2차 협상



contents



Oceans a
0, 2015

제1장 일반 기구

1. 국제연합(UN)
2. 국제식량농업기구(FAO)
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
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5.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6. 국제 세미나



제2장 지역수산물기구

1. 남태평양지역수산물관리기구(SPRFMO)
2.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ATTC)
3. 북태평양수산물위원회(NPFC)
4.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NPAFC)
5. 북서대서양수산물기구(NAFO)
6. 남인도양수산물협정(SIOFA)
7.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8.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CCAMLR)
9.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제3장 통상

1. 한-이스라엘 FTA 협상
2. 한-중미 FTA 제3차 협상
3. 한-에콰도르 SECA 협상
4. TPP 대비 양자 기술협약-호주
5. 뱀장어 자원관리 및 보존을 위한 제 9차 비공식 회의
6. 국제포경위원회(IWC) 제66차 총회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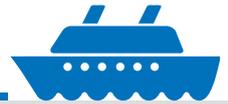
1. 2016년 상반기 읍서버 정기교육
2. 2016년 하반기 읍서버 정기교육
3. 제8차 국제 읍서버·모니터링 컨퍼런스

제1장 일반 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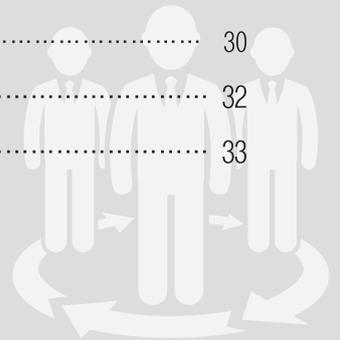
1. 국제연합(UN)

- 1.1 제1차 국가관할권 이원영역 해양생물다양성(BBNJ) 관련 준비위원회 10
- 1.2 제2차 국가관할권 이원영역 해양생물다양성(BBNJ) 관련 준비위원회 12





2. 국제식량농업기구(FAO)	
2.1 제34차 아태지역수산위원회 회의	17
2.2 제33차 FAO 아태지역 총회 회의	19
2.3 제32차 유엔농업식량기구 수산위원회	21
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	
3.1 제6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 해양수산실무그룹 회의	24
3.2 제7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 해양수산실무그룹 회의	26
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1 제117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산위원회 회의	28
4.2 제118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산위원회 회의	30
5.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32
6. 국제 세미나	33



1

국제연합(UN)

1-1

제1차 국가관할권 이원영역 해양생물다양성(BBNJ) 관련 준비위원회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1차 국가관할권 이원영역 해양생물다양성(BBNJ) 관련 준비위원회
The 1st Preparatory Committee established by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9/292: Development of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 일시/장소 : 2016. 3. 28. ~ 4. 8일(10일간), UN 본부, 미국 뉴욕
- 의장(조정관) : Eden Charles(트리니다드 토바고)

2. 참석규모

- 참석대상 : 우리나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호주, EU 등 70여 개 유엔회원국, IUCN(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CBD(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사무국, ISA(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등 10여 개 IGO 및 Ocean Care, Greenpeace, NRDC(National Resources Defense Council) 등 10여 개의 NGO
- 우리나라 대표단 : 주유엔대표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대학교, 해외수산협력원 국제협상전문관(총 12명)



II. 주요 논의결과

1. 해양유전자원·해양보호구역 등 지역기반관리수단·환경영향평가·능력배양 및 기술이전 등 4대 의제 논의

- 해양유전자원, 능력배양 및 기술이전에 대해 개도국 중심의 의견 제시
- 해양보호구역,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해 EU 등 소수의 국가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대다수의 국가들은 원론적인 차원의 의견을 제시
- 특히, 지역기반관리수단의 경우 ABNJ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보다는 해양환경 보호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강조
- 4대 개별 의제 자체의 범위 문제와 국제문서 자체의 범위, ABMT/MPA와 EIA에 적용가능한 원칙과 기구적(institutional) 메커니즘, 능력배양 의제와 다른 3대 의제와의 교차 문제 등 논의

2. 유엔해양법협약 등 기존 국제레짐 상의 개별국가들의 권리 및 주권영역에 대한 존중·보호에 대한 우려 제기

- MPA 설정 등에 있어 200해리 이원해역에서의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였고, EIA 설정과정에서 연안국의 환경영향평가 등 관할권 내의 활동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1-2

제2차 국가관할권 이원영역 해양생물다양성(BBNJ) 관련 준비위원회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2차 국가관할권 이원영역 해양생물다양성(BBNJ) 관련 준비위원회
The 2nd Preparatory Committee established by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9/292: Development of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 일시/장소 : 2016. 8. 26. ~ 9. 9(15일간), UN 본부, 미국 뉴욕
- 의장(조정관) : Eden Charles(트리니다드 토바고)

2. 참석규모

- 참석대상 : 우리나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호주, EU 등 70여 개 유엔회원국, IUCN(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CBD(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사무국, ISA(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등 10여 개 IGO 및 Ocean Care, Greenpeace, NRDC(National Resources Defense Council) 등 10여 개의 NGO
- 우리나라 대표단 : 주유엔대표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외수산협력원 국제협상전문관(총 11명)



II. 주요 논의결과

비공식 실무회의(8. 26. ~ 9. 1.)

- 4대 핵심의제 논의

①해양유전자원(이익공유 문제 포함), ②해양보호구역 등 지역기반 관리 수단, ③환경영향평가, ④역량강화 및 해양기술 이전

본회의(8. 31. ~ 9. 7.)

- 4대 핵심의제에 대한 본회의

①비공식 실무회의의 결과 보고, ②수렴 사항 및 추가 논의 필요 사항 등 논의

1. 해양유전자원(MGR; 이익공유 문제 포함)

- 대다수의 국가들이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나고야 의정서 등 기존 국제문서에서의 정의를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
 - 중국, 러시아는 동 협약과 새로운 국제문서는 적용범위가 상이함을 지적하며 이에 반대함
 - 코스타리카, 모리셔스 등 일부 국가들은 아직 작성 중인 정의임을 전제로, MGR 정의규정 문안을 제안
- **(개도국 의견)** 현지 내(in situ) 유전자원은 물론이고 현지 외(ex situ), 실험실(in silico), 파생물, 어류 까지도 망라하여 MGR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 이에 우리나라, 미국, 일본은 파생물과 상품에 해당하는 어류는 MGR의 정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 특히 우리나라는, UNCLOS 규정 등을 근거로 MGR의 지리적 범위를 in situ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미국은 심해저 상부수역을 제외한 심해저만의 in situ 유전자원으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
- 개도국들은 ABNJ 내 MGR에 인류공동유산원칙 적용 및 금전적·비금전적 이익공유 주장
- 선진국이 보유하고 있는(ex-situ, in silico) MGR에 대한 접근 필요성을 강조
- **(선진국 의견)** UNCLOS의 해석 등을 근거로, 인류공동유산원칙 적용에 명시적 반대외사를 표명
 - 이익공유 메커니즘을 논의하지는 EU의 제안은 수용

- MGR에 대한 접근 관련 ABNJ 내의(in situ) MGR에 대한 접근에 제한이 가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
- **(의견 수렴 사항)** ①해양유전자원(MGR)에 대한 정의(working definition) 합의 필요성 ②기존 협정의 정의 활용 ③재화(commodity)로서의 어류와 유전자원(genetic properties)으로서의 어류 구분 ④인류공동유산원칙과 공해자유원칙 ⑤비금전적 이익공유 ⑥현재 및 미래세대를 위한 이익공유 ⑦MGR 연구개발을 저해하지 않는 역량강화의 필요성 등

2. 해양보호구역 등 지역기반 관리 수단(Marine Protected Area, Area-based Management Tools)

- 대부분의 국가들은 BBNJ 관련 국제문서가 기존의 법적 문서와 체제에 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CBD, 국제해사기구(IMO), 지역수산기구(RFMO) 등 지역기반 관리 수단(ABMT)의 개념과 정의 활용을 제안함
- 일본, 중국 등은 ABMT는 목적, 지리적 범위, 해당 구역의 상황 및 환경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특히 일본은 ABMT 관련 수평적 방식(이해 당사자 간의 협력, 조정, 지속적인 의견교환을 통한 운용)을 선호
- 개도국들은 일정한 메커니즘의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협력과 조정의 필요성 강조
 - 벨리즈는 양 방식이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므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우리나라는 MPA 지정 이후의 운영·관리의 중유성을 강조하는 한편, top-down 방식보다는 협력과 조정을 통한 방식이 바람직하며 BBNJ의 보존과 지속가능 이용 사이의 균형 유지 강조
- **(의견 수렴 사항)** ①해양보호구역 등 지역기반관리수단(ABMT) 정의의 필요성 ②오염자 부담, 과학적 접근, 투명성 등 제 기본원칙 ③지속적 협력 필요성 ④조정되고 일원화된 접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메커니즘 형성 필요성 ⑤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국가가 ABMT 관련 의견 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 등

3.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크릴월경성 환경영향평가(Transboundary EIA)

- 아프리카 그룹, 카리브공동체, 트리니다드 토바고 등이 TEIA가 BBNJ 관련 국제문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우리나라, 미국, EU, 중국, 캐나다 등은 BBNJ 관련 국제문서의 적용범위는



ABNJ에 한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가관할권 이내 지역의 활동은 동 국제문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며 여전히 UNCLOS 제194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함

- 노르웨이는 지역과 무관하며,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 ABNJ라면 BBNJ 관련 국제문서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함

■ EIA 필요성 판단기준

- G77+중국, 아프리카 그룹 등은 EIA의 대상이 되는 행위 유형의 목록화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으며, EU, 일본, 미국 등은 UNCLOS와의 정합성, 기존 국제문서와의 중복적용 가능성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 코스타리카, 싱가포르 등은 행위 유형 목록을 마련하더라도, 동 목록은 한정적 열거 목록이 아니라 예시적 열거 목록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 일본은 해운 및 해저전선 부설행위는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므로 EIA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 미국은 ABNJ 내에서의 행위를 중대한 영향이 없는 것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분류하고, EIA 여부와 수준 등을 해당 단계에 따라 비례적으로 하도록 하는 접근법(tiered approach)을 제안함

■ 기타 주요 논의사항

①기존 국제문서로부터 환경영향평가(EIA), 월경성환경영향평가(TEIA), 전략적 환경평가(SEA) 등 정의 도출 ②환경영향평가의 국제관습법 형성 ③UNCLOS 제194조에 근거하여 TEIA를 국제문서 범위에서 배제할지 여부 등을 논의

4. 역량강화 및 해양기술이전(Capacity Building, Technology Transfer)

■ 개도국 입장

- G77+중국, 아프리카 그룹 등 개도국과 소도서국을 중심으로 수혜국 중심적 역량강화 및 의미있는 역량강화(meaningful capacity building)의 중요성을 언급함

■ 우리측 입장 및 각국 반응

- 우리나라, 미국, 일본은 역량강화와 기술이전이 자발적 참여의 전제 하에서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함

- 우리나라는 역량강화와 기술이전은 국가 간의 상호 신뢰 하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것, 각국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에 따라 역량강화와 기술이전을 위해 협력할 것, 역량강화 및 기술이전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 특히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고려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 개도국은 해양기술을 광범위하게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일본은 BBNJ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기술로 구체화할 것을 주장함

■ 의견수렴사항

- ①역량강화와 해양기술이전은 교차이슈로서 개도국의 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 이용 위한 노력에 필수적이라는 점 ②최빈국, 소도서개도국, 내륙개도국, 지리적 불리국의 특별한 사정 고려 필요성 ③신규문서의 기존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문제점 개선 필요 ④국가별 수요에 맞춘 역량 강화 및 기술배양 ⑤IOC 기본원칙의 유용성 ⑥다수의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5. 향후 대책

- 우리 국익에 기반한 정책적 판단에 국제법적, 과학적, 실질적 증거 보강 필요

2

국제식량농업기구(FAO)

2-1

제34차 아태지역수산물위원회 회의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34차 아시아 태평양지역 수산물위원회 회의
The 34th Session of the Asia Pacific Fisheries Commission(APFIC)
- 일시/장소 : 2016. 2. 12. ~ 2. 14(3일간), 스리랑카 콜롬보
* FAO WFU' SIDE EVENT : 2016. 2. 13(토) 스리랑카 콜롬보

2. 참석규모

- 참석대상 : 아태수산물(21개국), FAO사무국, NGO 등 50여 명
- 우리나라 대표단 : 해양수산물 국제협력총괄과, 해외수산물협력원 전문관 총 3명

II. 회의 결과

- **(APEIC 회기간 활동)** APEIC 2014~16년 업무계획을 제안하였으며, 위원회는 수산물관리에 대한 생태계 접근방식, BG 및 지속가능한 양식업의 강화, 내수면어업 관리, IUU어업 근절 분야의 활동 계획을 채택
- **(아태지역 양식업 동향)** 사무국은 2013년의 주요 양식 생산국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노르웨이, 이집트, 태국, 칠레, 미얀마 순임을 발표
 - 아태지역의 총 양식생산량은 약 7천만 톤으로 가치는 1,150억 달러임을 설명하고 이중 동남아 지역에서 생산된 양식량은 약 8백만 톤으로 229억 달러 규모를 차지하였음
- **(IUU어업)** 사무국은 제33차 APFIC 회의에서 아태지역의 IUU어업의 분류 및 IUU어업의 범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의 마련을 촉구하였음
 - 이는 IUU어업에 따른 경제적 분석을 통해 근절방안의 개발을 위함임
 - 우리나라는 EU의 IUU어업 예비국가 지정 해제 결과와 IUU어업 근절을 위한 아국의 노력 현황을 발표

- **(내수면어업강화를 위한 책임있는 양식업의 APFIC 지역 가이드 및 지표)** 등 논의에서 수산 자원 조성을 위한 이해관계자 및 정부부처 간의 협력, 거버넌스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도출, 회원국들은 이에 공감
- **(FAO-GEF 이니셔티브)** 등 이니셔티브는 광역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하지 않은 조업활동, 서식지 파괴, 오염 등의 위협으로부터의 보호·보존 방안 마련을 위한 지식·기술 공유 등의 지역적 협력을 위한 이니셔티브임을 설명
- **(FAO세계수산대학)** FAO세계수산대학 설립에 대해 우리나라는 “Other Matters” 의제에서 논의 될 수 있도록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하여 위원회 승인을 받음
 - 우리나라는 회원국들에게 세계수산대학 설립 추진 배경, 계획, 향후 일정 등을 상세히 설명
 - 위원회는 APFIC 차원에서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의 계획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의장이 발표하고, 미국, 중국, 방글라데시, 필리핀, 캄보디아가 지지의사를 표명
 - 2016년 2월 13일에는 FAO 세계수산대학의 오찬 리셉션을 개최하여 동 대학의 설립과 APFIC의 관련성을 설명,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고 홍보 유인물을 배포하여 적극적인 참여 및 지지를 요청

2-2 제33차 FAO 아태지역 총회 회의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33차 FAO 아시아 태평양지역 총회
The 33rd FAO Asia Pacific Regional Conference; APRC 33
- 일시/장소 : 2016. 3. 7. ~ 3. 11(5일간),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

2. 참석규모

- 참석대상 : 아태지역 FAO 회원국(44개국)대표단, 8개 비정부기구, 34개 국제기구 관계관 등
- 우리나라 대표단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해외수산협력원 전문관, 농림부, 산림청 등 총 11명

II. 회의 결과

- **(Blue Growth)** 회원국들은 FAO가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를 촉진하는 Blue Growth Initiative를 기타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이행할 것을 촉구함
 - 또한 수산양식시스템의 복원력 증대, IUU어업 근절 및 FAO 항만국조치협정* 등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역량 개발에 대한 지원을 요청함
 - * The FAO Port State Measures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 한국은 Blue Growth의 달성을 위한 고급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이 추진중인 UN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촉구함
- **(2015 수산업 동향보고서)** 사무국은 2015년 수산업 동향보고서 발간을 완료하였음을 보고하고 2016년 통계보고서 발간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
 - 2016년 4월 개최 예정인 제117차 수산위원회에서 동향 및 통계보고서 개편 논의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표명

- **(정부재정이전;GFT)** 사무국은 GFT 전문가 작업반 회의를 통해 분류 체계, 지표 개발 등 진전사항을 보고
 - 회원국들의 국가 간 상이한 정책에 따라 면세유 등 민감 사항에 대한 공감 기준이 도출 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제117차 수산위원회 회의에서 GFT 분서 매뉴얼 채택을 목표로 추진할 것을 표명
 - 위원회는 심층평가 결과 보고서에 마련된 권고 및 행동 계획 도입에 합의, 향후 수산위원회의 업무 효율성 증진에 기여할 의지를 표명
- **(양식면허제)** 사무국은 각국 양식업 및 관련 정책에 관한 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문안 및 점수 배정방식(Scoring System)을 제시함
 - 회원국들은 설문조사 문안의 설문항목과 내용이 세분화되었으며 정량평가 중심의 구성에 따라 국가별 상이한 정책 구조 반영을 하지 못하는 한계 지적 및 결과의 기타 목적 활용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
 - 사무국은 설문조사 문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고 11월 11일까지 수정문안을 근거로 설문 조사 및 분석을 진행하고 분석 결과는 제117차 수산위원회에서 발표할 것을 설명
- **(2017 ~ 18년 수산위원회 사업계획)**
 - 사무국은 2017 ~ 18년 사업계획을 수산위원회 비전 미션 제정 및 전략 마련과 연계하여 구성 예정임을 설명
 - 회원국들은 IUU어업, 식량안보, 선원강제노동과 고용환경 문제 등이 주로 이슈로 논의 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 이에 사무국은 추가 프로젝트 제안은 11월 말, 검토의견은 12월 중순까지 제출 해 줄 것을 요청
- **(수산관련 조세범죄)** 사무국은 조세범죄 관련 공동 워크숍 추진 계획 진행 결과 설명을 하고, 2016년 10월 제118차 수산위원회 회의와 공동 워크숍을 back-to-back으로 2016년 10월 13일 ~ 14일에 개최할 예정임을 설명
 - 회원국 들은 IUU어업, 강제노동, 조세범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수산범죄에 대한 논의를 진행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워크숍 개최를 환영
 - 일본은 IUU어업의 정의를 수산범죄 전반으로 확장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이러한 논의는 범죄위원회와 같은 다른 위원회에서 담당해야 할 영역이라고 지적

2-3 제32차 유엔농업식량기구 수산위원회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32차 유엔농업식량기구 수산위원회
The 32nd FAO Committee on Fisheries
- 일시/장소 : 2016. 7. 11. ~ 7. 15(5일간), 이탈리아 로마
- 의장 : Mr. Fabio Hazin(브라질)

2. 참석규모

- 참가국 : FAO 수산위원회 회원국(113), 준회원국(1), UN전문기구(9), 정부간기구(39), NGO(26) 등 약 300여 명
- 우리나라 대표단 : 해양수산부 장관, 국제원양정책관, 국제협력총괄과장, 국제협력총괄과 담당자, 외부전문가(부경대학교), 해외수산협력원 국제협상 전문관

II. 회의 결과

1. IUU 어업의 예방·억지·근절을 위한 2009 FAO 항만국조치협정(PSMA)의 발효 환영 및 개시 회의를 개최하고 특별 작업반을 설립하도록 당사국을 장려

2. 세계어업양식보고서(SOFIA) 및 FAO 책임 있는 수산업 규범(the Code) 이행 논의

- 2016 세계어업양식보고서(SOFIA) 발간에 대한 FAO의 노고를 치하하고, 책임 있는 어업양식관리를 위하여 회원국에게 국가데이터수집시스템을 강화하도록 촉구함

3. 한국의 세계수산대학 설립 수정제안 안건 상정

- 수산위원회는 FAO 사무국과 한국으로부터 제공된 한국의 수정제안에 주목함

채택 문안(158항)

The Committee took note of the statements delivered by the FAO Secretariat and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revised proposal. The Committee also noted that no working document was provided for discussion under this agenda item.

- 한국의 이니셔티브를 환영하며 동 제안에 대하여 감사를 포함

채택 문안(159항)

The Committee welcomed the initiative and thanked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proposal.

- 한국과 FAO 사무국이 협력하여 단계별 접근법을 위한 로드맵에 합의하고, 관련 FAO 의사결정 기구의 시범사업 결과 평가를 기반으로 이를 확정할 것을 장려함

채택 문안(160항)

The Committee encouraged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FAO Secretariat to cooperate and work together to agree on a roadmap for a step-by-step approach and to finalize it based on the evaluation of the results of the pilot partnership programme by the relevant FAO Governing Bodies.

4. 제15차 FAO 어류교역 소위원회 보고 승인

- 2016년 2월 모로코 아가딜에서 개최한 제15차 FAO 수산물 교역소위원회 보고를 최종 승인함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른 해양생물종 보호를 지지할 것을 표명함

5. 제8차 FAO 양식 소위원회 보고 승인

- 2015년 10월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개최된 제8차 FAO 양식 소위원회 보고를 최종 승인함
- 양식 데이터수집 향상 및 정보·지식 보급을 위하여 관련 국제·지역 기구와 지역수산기구의 협력 강화를 촉구함



6. 어획증명제도(CDS) 논의

- 어획증명제도 자발적 지침을 위한 기술자문(TC:CDS) 회의를 재개하고 지침을 마무리하여 최종 채택을 위해 동 지침을 2017년 FAO 7월 총회에 제출할 것을 승인함

7. 제33차 FAO 수산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

- William Gibbons-Fly(미국)가 제33차 FAO 수산위원회 의장으로 Andre Loua(기니)가 제1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됨. 이집트, 팔라우, 페루, 한국, 스페인이 부의장으로 선출됨

8. 기타 활동

- 한국은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 홍보를 목적으로 리셉션을 개최함

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

3-1

제6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 해양수산실무그룹 회의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6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 해양수산실무그룹회의
The 6th APEC Ocean and Fisheries Working Group Meeting
- 일시/장소 : 2016. 5. 5. ~ 5. 7(3일간), 페루 아레키파
- 의장 : Mr. Asis Perez(필리핀)

2. 참석규모

- 참석대상 : APEC 회원국 중 13개국과 2명의 개인 발표자(중국 레인보우피쉬 사, FAO) 등 50여 명
- 우리나라 대표단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원양산업과 각 담당자, 해양환경 관리공단 담당자, 해외수산협력원 전문관

II. 회의 결과

1. APEC 회원국 내 각국 현황 및 정보 공유

- (중국) ①8곳의 신규 해양보호구역(MPA) 설정, 연안 및 해양 생태계 보전 ②해양재난 공동성명 및 해안선 공동성명 발표 등 재난 복구 노력 ③2016 ~ 2020 해양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일반계획 작성 ④APEC 블루이코노미 모델 프로그램 이행 및 전년 대비 2015년 총 해양부문 가치 창출 7% 성장 등을 보고
- (일본) 일본수산청과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2015년 12월 17일에 해양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보전분야 협력을 위한 공동성명 발표
 - 북태평양 공해를 담당하는 북대서양수산기구(NPFC)에 가입하였으며 북태평양에서 공치 및 고등어조업 어선 수 급증에 우려를 표함



- **(미국)** 2015년 5월 국가해양협의회(NOC) 산하 IUU어업 및 수산물 물 사기에 대한 위원회 발족
 - ※ 구성인원은 전신인 '대통령 직속 IUU어업 및 수산물 사기 근절 대책위원회'와 동일 △국무부와 국립해양 대기청(NOAA)이 공동의장 담당
 - NOAA, 수산물 추적관리 프로그램의 일환인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 법안 발의 중, 어류제품의 시장진입 시점에서 정보 수집하는 프로그램으로 국산 및 수입제품에 두루 적용됨

2. 우리나라 활동

- ①항만국조치협정 가입 등을 통한 IUU어업 근절 ②폐어구 및 부표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 ③HACCP 등록제도를 이용한 어류 질병 예방을 통한 식량안보 등 노력 소개
- 제2차 기금심사에 제출 예정인 제2단계 APEC 해양오염 대응·대비 역량평가 교육훈련사업을 APEC 회원국에게 보고함

3. 향후 계획

- 미국이 수입 수산물 추적관리시스템 규칙의 법제화를 6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한국 수산물 수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규칙을 숙지하고 대비할 필요 있음
- APEC OFWG에서는 식량안보 정책파트너십(PPFS)과의 공동작업을 강화할 전망이므로 수산부문에서는 농업부문 연계성 높은 양식업 강화 필요

3-2

제7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 해양수산물실무그룹 회의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7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 해양수산물실무그룹회의
The 7th APEC Ocean and Fisheries Working Group Meeting
- 일시/장소 : 2016. 9. 20. ~ 9. 22(3일간), 페루 피우라
- 의장 : Mr. Pat Moran(미국, 임시의장)

2. 참석규모

- 참석대상 : APEC 회원국 중 12개국 및 초청발표자(중국 레인보우피쉬 사) 등 40여 명
- 우리나라 대표단 : 해양수산물부 해양환경정책과, 원양산업과 각 담당자, 해양환경관리공단 담당자, 해외수산업협력원 전문관

II. 회의 결과

1. APEC 사무국 보고

- 제3차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SCE, 2016. 8. 24.)에서 해양관련 문제의 주류화를 위한 운영위원회(MOISC)* 위임사항(mandate) 2년 연장, OFWG 독립평가 및 2016년 포럼 보고서 승인, 교차포럼 협력 권고문 승인, 독립평가 절차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예산관리위원회(BMC)의 역량강화 정책에 관한 소규모 실무그룹 지속적으로 운영 중을 보고

* Mainstreaming of Ocean-related Issues Steering Committee

- 제3차 고위급공무원회의(SOM, 2015. 8. 27. ~ 28.)에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권고문, APEC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 △APEC 구조개혁 및 서비스에 관한 정책보고서, 2020년 이후 APEC 발전방향, 거버넌스 개혁에 대해 논의함
- APEC 장관회의 및 리더회의(2016. 11. 17. ~ 18, 20.)에서 FTAAP 협력 전략연구, APEC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 APEC 구조개혁 및 서비스에 관한 정책보고서 등 채택 예정



2. 우리나라 활동

- 우리나라는 2016년 제1차 OFWG 기금심사를 통해 선정된 ‘APEC 역내 해양쓰레기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역량강화 사업’의 개요 및 향후 계획을 소개하고, APEC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함
- APEC 센터에 관한 과학, 기술, 혁신을 위한 정책파트너십(PPSTI) 가이드라인 수립을 고려하여, OFWG 센터의 독립적인 가이드라인 수립 및 상호 협력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
 - 회원국들은 OFWG 해양센터((한국의 해양환경교육훈련센터(AMETEC), 중국의 해양지속가능발전센터(AMSDC), 인도네시아의 해양수산정보센터(AOFIC))의 가이드라인 수립을 차기 회의 주요 의제로 포함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함

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1

제117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산위원회 회의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117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산위원회
The 117th OECD Committee on Fisheries Meeting
- 일시/장소 : 2016. 4. 18. ~ 4. 20(3일간), 프랑스 파리
- 의장 : Leon Lomans(네덜란드)

2. 참석규모

- 참가국 : OECD 회원국(28개국) 및 옵서버(FAO) 등 50여 명
- 우리나라 대표단 :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담당자, 원양산업과 담당자, 해외수산협력원 전문관

II. 주요 논의결과

1. 2017 ~ 2018년 사업계획

- 세부사업에 대한 회원국 우선순위 조사 결과 수산업 동향보고서 발간, 통계 DB 개선사업, 수산분야 무역협상 지원보고서 발간, 수산개혁방향 연구 등 7개 사업 최종 결정

2. 정부재정이전; GFT

- 새로운 수산보조추정(Fisheries Support Estimate; FSE)의 적용원칙 일부에 6주간 회원국 의견 수렴을 거쳐 written procedure 절차에 따라 최종승인을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EU는 한국, 일본, 러시아, 미국, 중국, 태국 등 6개국의 수산보조금에 대한 비교연구를 진행중임을 알림



3. 양식면허제

- 회원국들은 설문조사 결과가 국가 간 비교에 사용되는 것을 경계하며 설문지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사무국 의견대로 수정없이 설문문안을 승인함
- 우리측은 FSE 유류세 감면액 측정방식에 대한 상세설명을 요청하고,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통합적 접근 필요성을 피력함
- 전자조업보고시스템 구축 등 그간 IUU어업 근절정책 추진동향을 위원회에 보고함

4-2 제118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산위원회 회의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118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산위원회
The 118th OECD Committee on Fisheries Meeting
- 일시/장소 : 2016. 10. 13. ~ 10. 19(7일간), 프랑스 파리
- 의장 : Leon Lomans (네덜란드)

2. 참석규모

- 참가국 : OECD 회원국(28개국) 및 옵서버(FAO) 등 50여 명
- 우리나라 대표단 : 해양수산부 해안영토과 담당자, 원양산업과 담당자, 해외수산협력원 전문관

II. 회의 결과

1. 양식면허제

- 행정규제가 양식성장률 감소의 원인이라는 분석결과 도출 및 구체적인 정책대안 부족 지적

2. 2017 수산업검토

- 수산지원추정치(FSE) 데이터 포함, 회원국 등 참여국별 별도 챕터 마련 등 새로운 '2017 수산업 검토' 보고서의 형식 및 내용에 대해 회원국의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기로 함

3. IUU어업 근절

- 국가별 IUU어업 근절 실태 조사 관련 비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성, 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서의 조기 회람보완 등 지적사항을 보완해 나가기로 함



4. 수산분야 무역 협상 동향

- 동 작업이 MC 11(제11차 WTO 각료회의)에 활용될 수 있도록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진행할 것을 요청

5. 기타

- 사무국이 2017 ~ 2018년 업무예산계획(PWB)에 자발적 기여(VC)사업으로 제안된 IUU 감시 혁신 기술, 수산분야 기업책임경영(RBC), 온라인 다국어 어류사전(6차 개정판) 확장 등에 회원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함
- EU가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한국, 일본, 러시아, 미국, 중국, 대만 등 6개국 수산보조금 비교 연구 결과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설명함
- 2017년 수산위 의장단에 해수부 해양영토과 담당자가 부의장으로 연임됨(4년째)

5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해양 관련 국가별 단일연락창구에 관한 ARF 워크숍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ASEAN 해양 관련 국가별 단일연락창구에 관한 ARF 워크숍
ASEAN Regional Forum(ARF) Workshop on National Maritime Single Points of Contact
- 일시/장소 : 2016. 4. 28. ~ 4. 29(2일간), 필리핀 세부
- 의장 : Jose Luis M. Alano(필리핀) Steve Alexander(호주), Ian Middleton(미국) 공동 의장

2. 참석규모

- 참가국 : 한국,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27개 ARF 회원국
- 우리나라 대표단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담당자, 해외수산협력원 전문관, 국민안전처 해상수사정보과 경감 및 경장 각1인

II. 회의 결과

1. 주요 논의 내용

- ①해양안보협력에 관한 국제법 및 ASEAN법 소개 ②해양안보 사례 발표 및 협력 ③해양안보 법 집행기관 단일창구 개설 필요성 ④단일창구 개설 운영사례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을 논의함
- 불법조업, 밀입국, 마약밀수, 수색구조 등 각종 해양사건·사고 대응의 신속성, 효율성 확보를 위해 단일 법집행 창구운영 필요성 공감
- 이를 위해 권한, 예산, 경비세력 등 제반조건 필요성 확인
- 말련, 인니 등 내부적인 정치·예산 등의 문제로 단일창구 지정 곤란 토로

2. 향후 계획

- 2017년 해양 관련 법집행기관 단일창구 실행과 관련, 사전 시현 후 2018년 ARF 외교부장관 회의 단일창구 공동성명안 발표를 준비하기로 결정

6

IUU어업 및 관련범죄 근절을 위한 국제 세미나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IUU어업 및 관련범죄 근절을 위한 국제 세미나
International Seminar on the Establishment of a Regional Convention against IUUF and Its Related Crimes
- 일시/장소 : 2016. 5. 18. ~ 5. 19(2일간), 인도네시아 발리
- 의장 : Andreano Erwin,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 보좌관(세미나 의장), Basilio Diaz Araujo, 해사안전회복 차관보(컨퍼런스 의장) 공동 의장

2. 참석규모

- 참가국 및 기구 : 한국, 미국, EU,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라오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동티모르, 베트남, 솔로몬제도, 파푸아뉴기니, 미얀마, 팔라우, 캄보디아, 브루나이 대표단 및 FAO, INTERPOL, UNODC(국제마약 범죄사무소), SRFC(서아프리카소지역수산위원회) 등 120여 명
- 우리나라 대표단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담당자, 해외수산협력원 전문관

II. 회의 결과

1. 주요 논의 내용

- ①IUU어업 및 수산범죄 근절을 위한 역내 협약의 필요성 ②국제법을 반영한 국가별 제도 수립 선행 ③국제법을 반영한 동일한 수준의 국가제도 수립 우선 필요성 등 논의

2. 수산범죄 근절 관련

- 인도네시아는 IUU어업 및 수산범죄 근절을 위하여 국제법을 반영한 종합적 국가제도 수립과 그 이행을 위한 강력한 역내 협약의 필요성 제기
 - 이에 대해 참가국 모두 역내 IUU어업과 관련 수산범죄를 효과적으로 소탕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을 반영한 국가별 제도가 수립되어야 함에는 공감하지만 새로운 협약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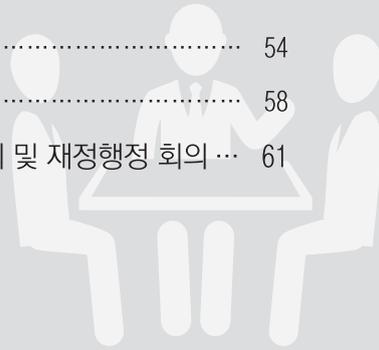
- 협약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방법 모색이 우선이라는 의견 제시
- 또한, 향후 역내 협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역내 모든 국가가 국제법을 반영한 동일한 수준의 국가제도 수립이 우선되어야함을 주장
 - EU, 미국 등 주요 시장국은 IUU어업 및 수산범죄 근절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
 - 시장국의 수입금지 등 영향력 발휘가 IUU어업 취약국들의 정책 및 규제를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 표명





제2장 지역수산기구

1.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 제4차 연례회의	38
2.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ATTC)	
2.1 제90차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ATTC) 연례회의	40
2.2 제90차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ATTC) 속개 연례회의	43
3.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제2차 정기회의	45
4.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NPAFC) 제24차 연례회의	48
5. 북대서양수산기구(NAFO) 제38차 연례회의	50
6. 남인도양수산협정(SIOFA)	
6.1 제1차 과학위원회 회의	54
6.2 제3차 당사국회의	58
7.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제13차 이행위원회 및 재정행정 회의	61



8.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CCAMLR)

8.1 전자어획증명제도 워크숍 63

8.2 제35차 연례회의 66

9.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이행위원회 제4차 작업반 회의... 69



1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 제4차 연례회의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 제4차 연례회의
4th Commission meeting
- 일시/장소 : 2016. 1. 21. ~ 1. 29(10일간), 칠레 발디비아
- 의장 : Mr. Gorden Neil(호주)

2. 참석규모

- 참가국 : 15개 회원국 및 옵서버 등 약 100명
- 우리나라 대표단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담당자, 국립수산과학원 원양자원과 담당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한국원양산업협회 담당자, 해외수산협력원 전문관 등 총 5명

II. 주요 논의결과

1. 전갱이 보존관리조치(CMM 3.01) 개정

■ 칠레전갱이 어획한도량 설정

- 과학위원회 권고에 따라 2016년 41만 톤의 칠레전갱이 어획한도량 설정
 - 우리나라(5,500톤)를 비롯한 9개국은 2015년과 동일한 쿼터 확보

■ 전배규정 개정 제안서 발의

- 우리나라는 국가간 전배를 도모하기 위해 기존 전배규정을 개정한 제안서를 발의, 위원회 총의로 채택
 - (제안배경) 기존 규정은 어획물 귀속 주체를 기국으로 한정하고 있는 바, 전갱이 쿼터 전배국은 어획 실적 손실을 우려하여 전배에 소극적 태도 견지
 - (제안내용) 전배 규정에 “전배 받은 물량은 향후 조업권 배분 시 참고하지 아니한다”는 문구 삽입



2. 2016년 SPRFMO IUU목록 등재 선박 현황

■ 신규 등재 선박

선명 및 기국	등재 요청국	등재 요청사유	기국 대응	비고
MYS MARII (러시아)	뉴질랜드	협약수역 내 무허가 조업	무응답	CCAMLR 허가선박

■ 기존 등재 선박

선명 및 기국	이전 선명 및 기국	등재 요청국	등재 요청사유
AURORA (러시아)	- (페루)	뉴질랜드	협약수역 내 무허가 조업
DAMANZAIHAO (페루)	LAFAYETTTE (러시아)	칠레	선박목록부 미등재 상태로 전제

3. IUU등재 관련 자료 공개 여부

- (배경) 위원회 IUU목록 등재 과정에서 수집되는 자료 등을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 것인지 논의
- (논의결과) 기국 선박의 경우 웹사이트 비공개란에, 무국적선의 경우 전체공개란에 게재하는 현행 방식 유지

4. 기타 보존관리조치 제·개정

- 이행기술위원회(CTC)에서 검토한 총 8건의 보존관리조치 제·개정 제안서 채택

조치명		주요 내용
신규	신규-시험조업 프레임워크	협약수역 내 신규-시험조업의 정의, 신청요건 및 절차 수립
신규	이빨고기 시험조업 수행	뉴지는 2016 ~ 2017년 CCAMLR에 인접한 협약수역에서 이빨고기 저연승 시험조업(연간 30톤)을 시행
신규	무국적선박	국가 간 무국적 선박에 관한 정보공유 촉구
CMM 1.04	IUU목록	IUU선박의 선명/국제무선번호 변경시 이러한 정보를 가진 국가는 사무국에 이를 보고하여야함
CMM 2.03	저층어업	과학위원회는 현행 저층어업 조치 검토결과를 2017년 연례회의에 보고하여야함
CMM 2.04	바닷새 부수어획 저감	트롤 및 저층어업선은 과거 5년간 옵서버를 100% 승선시킬 경우 부수어획 저감조치 예외조항 적용
CMM 2.05	선박등록부	향후 필요시 등 조치를 개정하고, 선박의 '허가개시일'을 'SPRFMO 선박등록부 등재일'로 변경
CMM 3.02	데이터 표준	기존 승선옵서버 외 양륙항 옵서버가 수집한 데이터도 위원회에 제공 가능

2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ATTC)

2-1

제90차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ATTC) 연례회의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ATTC) 회의(제7차 이행검토회의, 제4차 행정재정위원회, 제90차 연례회의)
The 7th Meeting of the Committee for the Review of Implementation of Measures Adopted by the Commission, The 4th the Committee on Administration and Finance, The 90th meeting of the Inter-American Tropical Tuna Commission
- 일시/장소 : 2016. 6. 22. ~ 7. 1(10일간, 미국 라호야)
- 의장 : David Hogan(이행위, 미국), Lillo Manscalchi(행정재정위, 베네수엘라), Guillermo Morán(에콰도르)

2. 참석규모

- 참가국 : 21개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 NGO, 옵서버 등 약 200명
- 우리나라 대표단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담당자, 국립수산과학원 담당자, 한국원양산업협회 담당자, 해외수산협력원 전문관

II. 주요 논의결과

1. 이행위원회

- 우리나라는 미준수-미보고 4문항에 대해 설명 및 답변
 - 옵서버 승선비율 준수(C-11-08) 관련, 국내 옵서버 수급 어려움으로 인하여 현행 5%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고 2.4% 달성하였음을 소명하고, 금년 하반기 동부태평양 수역 5% 승선의무비율 준수계획 및 노력을 알림
 - * 사무국 자료상 금년도 한국 옵서버 승선율은 2%로 나타났으며, 필요 조건인 5%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내년에는 반드시 승선율 향상을 달성해야 함



- 우리나라 이행실문지 불이행 사항(총 5건)

관련 결의	불이행 내용	우리측 소명
C-13-01 다량어보존 다년도 계획	1. (13항) 자국선단의 감사·감독·통제(MCS)의 국내조치 보고	2. 국내 감사·감독·통제(MCS) 조치 설명
C-11-02 바닷새에 미치는 영향 감축	3. (1항) 바닷새를 위한 국제행동계획(IPOA) 이행내용 보고	4. 선장교육 등 국내 이행 조치 설명 및 차기 보고의무 준수의지 표명
C-11-08 연승선 과학옵서버 승선	5. (1항) 옵서버 승선의무비율(5%) 보장	6. 옵서버 승선의무비율 준수를 위한 금년 조치계획을 설명
C-07-03 바다거북에 대한 어선의 영향 감축	7. (2항) 바다거북에 대한 FAO 지침서 이행절차 보고	8. 선장교육 등 국내 이행 조치 설명 및 차기 보고의무 준수의지 표명
	9. (7C항) 혼획 감축을 위한 연승선 시험 조업을 착수 및 결과 보고	10. 향후 자원마련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연승선 시험 조업계획검토 예정

2. 재정위원회

■ 2017년 전체 예산 \$6,737,489 편성

- 2016년(6.42백만\$) 대비 4.83%으로 소폭 증액(총 6.73백만\$)
- 한국은 185,629\$ 부담 예정(작년 184,629\$ 대비 0.4% 인상)
- 위원회 영역별 활동비는 다음과 같음

2015 ~ 2018년간 연도별 지출 및 예산(안)

(단위 : USD)

구분	2015	2016	2017	2018	증가('16 ~ '18)
행정	1,031,446	1,057,090	1,253,502	1,241,072	183,982
자료수집·관리	1,001,690	1,035,244	1,095,369	1,117,276	82,032
생물학·생태계	1,701,424	1,781,482	2,012,054	2,052,295	270,813
자원평가	869,212	911,110	977,397	996,945	85,835
부수어획	804,473	853,221	900,852	918,869	65,648
옵서버 프로그램	792,759	785,000	849,624	849,624	64,624
Total	6,201,004	6,423,147	7,088,797	7,176,080	752,933

3. 총회

- 금번 총회에서는 회원국 제안서 논의 및 채택, 과학위 자원평가 결과 발표 및 권고(2015년 다량어 자원평가 발표, 제7차 과학자문위원회 권고, 위원회 과학담당관 보존조치 권고), 산하위원회 및 실무그룹의 보고, 결의안 이행 검토, 의장 및 부의장 선출 등이 이루어짐
- 위원회는 19개 제안서중 6개 제안서* 채택, 8개 제안서는 특별회의 개최해 재논의하기로 결의

제안서 논의 결과

(단위 : USD)

구분	제안서	제안 주체	채택 여부
1	FAD 데이터 수집 및 분석(C-15-03) 개정 결의	EU	채택
2	상어 보존조치(C-05-03결의 대체) 신규제안	EU, 중남미 7 개국	채택
3	상어류 관리에 관한 결의	미국	채택
4	미흑점상어 보존조치	남미 7 개국	채택
5	북태평양 참다랑어 보존조치	멕시코	채택
6	어획통제규칙에 관한 결의	에콰도르	채택
7	항구검색 최소화 기준 관련 결의	EU	재론 예정
8	연승선 눈다랑어 한시적 전배 조치	일본	재론 예정
9	폐기 허용성에 관한 결의 신규 제안	에콰도르	재론 예정
10	2017 ~ 2019 다년간 참치 보존관리조치(C-13-01) 개정	미국	재론 예정
11	공해상 승선검색 조치	미국	재론 예정
12	옵서버 안전 증진 조치	미국	재론 예정
13	연승선 옵서버에 관한 결의(C-11-08) 개정	멕시코	재론 예정
14	이행정보의 활용에 관한 결의 제정	멕시코	재론 예정
15	미흑점상어 보존조치	EU	4에 통합
16	상어 보존조치 결의(C-05-03) 개정	중남미 7 개국	미채택
17	2017 ~ 2018 태평양 참치 보존관리조치	미국	18로 대체
18	2017 ~ 2018 태평양 참치 보존관리조치	멕시코	수정안 채택
19	바닷새 영향 경감 조치	미국	철회

2-2

제90차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ATTC) 속개 연례회의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90차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ATTC) 속개 연례회의
The 90th Resumed meeting of the Inter-American Tropical Tuna Commission
- 일시/장소 : 2016. 10. 12. ~ 10. 14(3일간), 미국 라호야
- 의장 : David Hogan(이행위, 미국), Lillo Manscalchi(행정재정위, 베네수엘라),
Guillermo Morán(에콰도르)

2. 참석규모

- 참석대상 : 21개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 NGO, 옵서버 등 약 100명
- 우리나라 대표단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담당자, 해외수산협력원 전문관



Ⅱ. 주요 논의결과

1. '참치 보존 조치 미결 제안서' 결의와 권고 논의

: 9개 제안서 중 6개가 논의되었고 이 중 3개 통합, 1개 가결

2.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선단능력 활성화: 부결

3. 부속기구·실무그룹 활동 보고

4. 차기(2016. 7. ~ 2017. 7.) 의장, 부의장 선출: 기존 의장단 유지

- 의장(에콰도르/ 기에르모 모란), 부의장(과테말라/ 브라질 시푸엔테)

5. 부속기구 및 실무그룹 의장 선출:

- 재정위 의장(베네수엘라/ 리요 만스칼치)
- 선단능력 실무그룹 의장(멕시코/ 알폰소 미란다)
- 부수어획 실무그룹 의장(미국/ 루이스 플래처)



3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제2차 정기회의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제2차 정기회의
2nd meeting of the North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 일시/장소 : 2016. 8. 22. ~ 8. 26(5일간), 일본 동경
- 의장 : Mr. Kenji Kagawa(일본)

2. 참석규모

- 참가국 : 7개 회원국 및 옵서버 등 약 100명
- 우리나라 대표단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담당자, 국립수산물과학원 원양자원과 담당자, 한국원양산업협회 담당자, 해외수산협력원 전문관 및 원양선사 등 총 6명

II. 주요 논의결과

1. 전제제도 보존관리조치 채택

- 저층조업선을 대상으로 협약규정의 이행 및 집행, 효과적인 감독, 통제, 감시(MCS) 조치 수행 제안
- 어선 및 운반선은 어획물을 전제하기 전에 어종, 물량 및 전제위치 등 관련정보를 해당 기국에 사전 통보
- 각 기국은 매년 전제신고서로부터 수집된 자료에 대한 요약보고서를 연례보고서에 첨부하여 사무국에 제출

2. 무국적선 보존관리조치 채택

- 회원국과 협력적 비체약국(CNCPs)은 무국적 어선 정보를 공유하며 사무국에 이를 보고
- 회원국과 협력적 비체약국은 어선 및 선원의 안전 및 조사활동의 경우를 제외하고, 무국적어선의 전제와 하역을 금지하도록 권고
- 사무국은 무국적선에 대한 정보를 모든 회원국과 협력적 비체약국에게 배포하며, 이에 대한 보고서를 기술이행위원회에 제출

3. IUU어업 관련 보존관리조치 채택

- 회원국은 IUU 이슈를 다루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통감하며, IUU어업 금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합의
- NPFC 어선목록 미등재, 쿼터 없는 기국의 조업선, 협정해역의 어획량 미보고, 소형어류 어획, 금어 지역 및 기간의 조업, 금지된 조업장비사용 등이 IUU어업으로 간주
- 사무국은 회원국을 통해 IUU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목록을 수집하며, 위원회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IUU어업 목록 채택

4. 고등어 보존관리조치 채택

- 가능한 한 조기에 자원평가를 마무리하고 북태평양 공해에서 고등어 어획 허가 어선의 척수를 증가 시키지 않는 것을 권장
- 과학위원회는 고등어 자원평가를 완료할 것이며, 위원회에 조언 및 권고사항을 제시할 예정
- 일본은 본 제안서와 함께 고등어 자원평가에 대한 워크숍* 개최를 제안하였고, 위원회로부터 허가를 얻음

* 고등어 워크숍 일정: 2017년 2월, 일본 동경

5. 공해상 승선검색제도 보존관리조치 논의

- 불법어업감시 및 보존관리조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해상 승선검색 절차를 마련
- 위원회 등록부에 등재된 어선, 당국 혹은 검색자만이 승선 검색할 권한을 가지며, 검색자는 어선의 면허, 장비, 기록, 설비, 수산자원 등을 검색
- 옴서버 승선 및 병선(military vessel) 활용에 대한 추후 논의가 필요하며, 3년 내본 제안서가 개선 되지 않을 시 자동으로 효력이 발휘됨*에 착안하여 추후 재 논의기로 함

* Articles 21 and 22 of the UNFSA



6. 현 보존관리조치 검토 및 개정

- 선박등록 보존관리조치 관련하여, IMO number* 도입 및 비회원국 소속 운반선등록부 제출 제안
 - *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 vessel number
- 공치 보존관리조치 관련, 일본은 NPFC 어선등록부에 등록된 어선 수 증가에 우려를 표명하며 각 회원국에게 면허발급을 금지 요구
 - 각 회원국들은 매년 2월 말까지 이와 같은 보존관리조치 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연례보고와 함께 제출 권고

4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NPAFC) 제24차 연례회의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NPAFC) 제24차 연례회의
NPAFC 24th Annual Meeting
- 일시/장소 : 2016. 5. 15. ~ 5. 20(6일간), 부산

2. 참석규모

- 참가국 : 한국, 미국, 캐나다, 러시아, 일본 및 옵서버 등 약 120여 명
- 우리나라 대표단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조업감시센터, 수품원, 해경, 해외수산협력원, 경남 민물고기센터, 경북 민물고기연구소, 울산시 해양수산과, 부경대 등 9명

II. 회의결과

1. 회계감사보고서 검토 2015 ~ 2016년 및 2017년도 예산안 심의

■ 행정 재정 사항

- (회계감사보고서)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지난 1년간 감사보고서를 검토 및 승인하고, 로엠크루즈를 감사로서 재임명
- 2016/2017년 회계연도 및 2017/2018년도 회계연도에 따른 예상된지출안과 수입안을 비교시 C\$16,000 ~ 57,000까지 잉여금 발생 예정
 - (인건비) 모든 직원의 급여 수준은 캐나다 연방 정부의 급여 규모에 따르며, 사무국장을 제외한 모든 직원의 급여는 생계비 지수의 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 연 2 ~ 3%를 추정
 - (기타) ①여비 ②통신비 ③계약 ④임대 ⑤비품 등 논의

2. 2015/2016 사무국 행정 보고서 검토

- 사무국장이 지난 1년간의 NPAFC 감시위원회, 재정행정위원회, 과학통계위원회 등 전반에 걸친 활동 내역 발표



- 2015년 5월 이후 사무국 조직구조 변화
 - 제니퍼 2015년 11월 1일 이후 행정관 포지션
- 제23차 연례회의 기록 배포(2015. 7. 8.)
- NPAFC 수첩에 한국어 텍스트 업데이트 등
- 국별분담금 납부현황 검토 및 각국의 연락관 업데이트
 - 분담금 납부 현황(2016 ~ 2017)
 - 일본 2016년 5월 6일 \$180,000(in full)
 - 한국 2016년 3월 28일 \$180,000(in full)
 - 러시아 2016년 5월 5일 \$90,001
 - * NPAFC 국별분담금 : 5개국이 균등분담(각 C\$180,000, 약 1.6억 원)
- F&A 한국 연락관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박정석 연구사

3. NPAFC 인턴십 후보자 선발

- 매년 9월 1일부터 6개월간 사무국에서 근무하게 되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바, 국제연어의 해(International Year of the Salmon)행사에 대비하여 금년에는 2명을 선발
 - * 2015년도 인턴십 : 강민호 국제읍서버(한국, 2015. 9. ~ 2016. 2.)
- 2016년 인턴십 프로그램 접수 및 마감(3월 16일) : 16명 지원
- 사무국 제안 : ①인턴 추가 고용 ②인턴 추천 2명
 - Ms.Madeline Young(캐나다 UBC 해양생물학 학사, 아이슬란드 Akueyri 해안자원관리 석사),
 - Ms.Caroline Graham(미국, 아이오와 학사, 석사 중)

4. NPAFC 25주년 계획 논의

- NPAFC 제25차 연례 회의는 2017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소재의 빅토리아에서 개최 예정이며, 위원회의 25주년 행사 일정 논의
 - ①Tie-in with Royal B.C. Museum에 기념비 전시 ②기념도서 ③25주년 비디오 ④외부감사인사 ⑤기념품, 로고 ⑥회의장소(Royal B.C. Museum, 해양과학연구소, 부차드가든) 기후 등 고려 ⑦자금조달 ⑧참석자 및 효과적 주제 전달 방법 논의 ⑨축하이벤트 방법논의 등

5

북대서양수산기구(NAFO) 제38차 연례회의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북대서양수산기구(NAFO) 제38차 연례회의
38th Annual Meeting of Northwest Atlantic Fisheries Organization
- 일시/장소 : 2016. 9. 19. ~ 9. 23(5일간), 쿠바 바라데로
- 수산위원회 의장 : Mr. Temur Tairov(러시아)

2. 참석규모

- 참가국 : 12개 회원국 및 옵서버 등 약 200명
- 우리나라 대표단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담당자, 한국원양산업협회 담당자, 해외수산협력원 국제수산협상전문관

II. 회의결과

1. 수역 및 어종별 TAC 설정

- 수산위원회는 과학이사회 권고를 바탕으로 총 14개 어종의 TAC를 다음과 같이 설정

어종별 TAC 논의결과

수역별 어종	TAC	논의 결과
3M Cod(대구)	13,931 (-)	· EU 제안에 따라 2016년 및 2017년 과학이사회 TAC 권고 (2016 : 12,425, 2017 : 15,436) 평균치 2년간 적용 · 17년에 차기 TAC(2018 ~ 2019년) 결정
3M Red fish(적어)	7,000 (-)	· 과학이사회 TAC 권고(2016 ~ 2017년 : 7,000톤) 채택 · 부수어획 저감을 위해 선박의 어획선택성 실험 수행 권고
3NO Cod	0 (-)	· 2년간(2016 ~ 2017년)간 조업 금지
3O Red fish	20,000 (-)	· 향후 2년(2017 ~ 2018년)간 적용
3LN Red fish	14,200 (-3,800)	· 향후 2년(2017 ~ 2018년)간 적용



수역별 어종	TAC	논의 결과
3LNO American plaice	0	· 향후 3년(2017 ~ 2019년)간 적용
3LNO Yellowtail flounder (각시가자미)	17,000 (-)	· 과학이사회는 2017년 23,600톤 권고 · 혼획 어종인 대구 및 홍가자미가 모라토리엄 상태임을 고려하여 전년도 TAC 유지 · 2017년 과학이사회 검토 예정
3NO witch flounder (기름가자미)	2,172 (-)	· 과학이사회 TAC(2016년 : 2,175톤, 2017년 : 2,225톤) 권고
3NO White Hake (흰긴수염대구)	1,000 (-)	· 전년도 TAC 유지 · 어기 중 예외적으로 높은 어획량 발생 시, 체약당사국이 사무국에 이를 통보하고 투표를 통해 TAC 상향(1,000 → 2,000톤) 조정 가능
3NO Capelin (열빙어)	0 (-)	· 2015년 결정한 TAC(2016 ~ 2018년) 유지
3LNOThorny skate(홍어)	7,000 (-)	· 향후 2년(2017 ~ 2018년)간 적용
중해역2,3KLMN Greenland hailbut(오가자미)	10,966 (-)	· 전년도 TAC 유지
중해역3,4 Squid(오징어)	34,000 (-)	· 향후 3년(2017 ~ 2019년)간 적용
3LNO 새우	0 (-)	· 과학이사회 권고에 따라 기존 모라토리엄 유지

2. 2017년 우리나라 쿼터

- 전년 대비 2017년 우리나라에 배타적으로 할당된 쿼터는 전년과 동일한 총 622톤*으로 확정

* 적어 169톤(소해역 3M : 69톤, 소해역 3O : 100톤), 오징어 453톤(중해역 3+4)

연도별 우리나라 쿼터

연도	총 쿼터(톤)	어종별 쿼터(톤)
2013	718	새우 96, 오징어 453, 적어 169
2014	670	새우 48, 오징어 453, 적어 169
2015	622	새우 0, 오징어 453, 적어 169
2016	622	새우 0, 오징어 453, 적어 169
2017	622	새우 0, 오징어 453, 적어 169

3. 취약한 해양생태계(VMEs) 보호를 위한 금어구역 지정

- 3M 13, 14지역은 Sea pens(바다조름) 집중 서식지역으로 과학위 권고에 따라 금어구역으로 지정하여 보호 필요
- 2017 ~ 18년 말까지 2년간 지정하고 생태계 복원가능성 등에 대해 과학적 평가를 거쳐 지정연장 등 추진 합의
- 수산위원회는 EU, 러시아, 일본 측이 추가 금어지역 지정수정안을 수용키로 합의하여 제안서 채택

4. 2J, 3KLMNO수역 오가자미(Greenland halibut) TAC 논의

- 과학위원회는 HCR(어획통제규칙)을 적용하여, 2017년 TAC를 2016년(10,966t)보다 5% 감소하여 지정할 것을 권고
- 일본, 러시아, 덴마크, 프랑스, 한국, 쿠바는 2017년의 오가자미 TAC를 2016년과 같은 어획량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
- 연안국인 미국, 캐나다는 지속가능한 어족자원 활용을 위해 오가자미의 TAC 감소에 대해 찬성 의사를 표명
- 수산위는 2017년은 전년 TAC(10,966톤)와 같은 수준으로 하되, 2018년 TAC는 과학위 평가를 토대로 재협의키로 합의

5. 상어 지느러미 절단 금지

- EU, 미국, 노르웨이, 쿠바 4개국에서 공동으로 상어관리에 대한 NCEM 12조항*의 개정에 대한 제안서 발의
 - * NCEM 12조항: 선상에 보유한 상어의 지느러미는 상어몸통 중량의 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 2015년 연례회의에도 EU, 미국이 상어 지느러미 절단 금지 제안서 발의
- 선상에서 상어 지느러미 절단을 금지하며 몸통에서 분리된 지느러미의 선상 보유·전재·양륙을 금지하며, 첫 양륙 시에 지느러미를 몸통에 부착한 상태 유지
- 수산위에서 합의가 도달하지 않아 투표를 통해 다수결로 개정안 채택
 - 12개 회원국 중 9개 회원국 찬성, 일본 반대, 러시아 기권, 우크라이나 불참



6. VMS 데이터 제공 제안서 채택

- 캐나다와 EU는 어업과 유전 등 탄화수소(hydrocarbon) 개발로 인한 잠재적 충돌 및 중복활동을 방지하고자 체약국의 축적된 VMS 데이터를 요청하는 상대국에 이를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제안서 발의
 - (현 NAFO CEM) 조업정보 기밀유지를 위해 VMS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
 - (데이터 활용) VMS 데이터 제공을 반대하는 체약국을 제외하고 찬성한 체약국에 한해 VMS 데이터를 활용

6

남인도양수산협정(SIOFA)

6-1

제1차 과학위원회 회의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남인도양수산협정(SIOFA) 제1차 과학위원회 회의
- 일시/장소 : 2016. 3. 20. ~ 3. 24(5일간), 호주 프리맨틀

2. 참석규모

- 참가국 : 8개 회원국 정부, 연구소, NGO 등 약 30여 명
- 우리나라 대표단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서기관 김성호
수과원 원양자원과 해양수산연구사 이재봉, 이종희
해외수산협력원 협상전문관

II. 주요 논의결과

1. 과학위원회 작업 계획

■ 중장기 조사 계획 수립(의제 4)

- 주요 과학활동 주제에 대한 3~5년의 장기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2년마다 검토 계획 합의
 - ①자료수집, 보고, 검토 및 교환 절차 개발 ②취약해양생태계 지표종 분류 및 분포 ③어업활동 결정 ④자원평가 ⑤보호종 어업영향 분석 ⑥임시 보존조치 검토 및 과학적 조언
- 작업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가평가(Peer review) 기준 및 절차 수립
- 자원평가 어종을 어획량이 많은 파타고니아이빨고기, 오렌지라피, 빛금눈돔 으로 선정함
- SIOFA 및 CCAMLR 수역을 왕래하는 파타고니아이빨고기 자원의 경우 상호 협력하여 자원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



- 심해상어
 - 자망어업에서 목표종으로 어획되는 상어류의 어획량이 이미 상당 수준 발생하였으며, 향후 부수어획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원평가 가능성 검토 필요
- 오렌지리피 및 빛금눈돔 자원평가의 경우 외부전문가(음향자료 분야 등)와 협업을 통한 작업 방식 제안
- **보호종 관리(의제 8)**
 - 과학위원회 작업계획 내 어업 및 환경(지구온난화)에 의한 영향을 고려한 보호종 관리방안 채택
 - 보호종 관리를 위한 협업연구
 - FAO는 SIOFA가 유용한 자료를 공유하도록 독려
 - 호주는 심해상어, 바다새 등 보호종에 대하여 위험도 분석 결과를 차기 과학위원회에 보고 예정
 - 동 위험평가를 완료키 위해 NGO 등 외부기관(예 : birdlife international)으로부터 자문 예정

2. 어업활동

- **어업 활동 보고(의제 5)**
 - 8개 회원국과 1개 옵서버국에서 SIOFA 수역의 어업활동 보고
 - 대한민국, 모리셔스, 세이셸, 호주, 일본, 쿡아일랜드, 프랑스, EU(스페인), 코모로스
 - 국가별 어획 동향
 - 1) 우리나라: 이빨고기와 빛금눈돔을 목표로 하는 저연승(2009 ~ 2013년) 및 트롤어선(2011 ~ 2013년)이 각각 조업하였으나 2014년부터 조업 중단
 - **(저연승)** 2개사(인성실업 2, 사조대림 2) 선박 4척이 조업하였으나 어획량 저조, 기상악화 등으로 타 수역으로 이동(SEAFO, 포클랜드)
 - **(트롤)** 1개사(사조오양) 선박 1척이 3년간 조업하였으나, 사업성이 높은 포클랜드 수역으로 이동
 - * 쿼터 관리를 위한 어획조절규칙(Harvest control rule) 도입 대비하여 1999 ~ 2003년간 어획자료 추가하여 국가 보고서를 SIOFA에 수정 제출함
 - ** 기존 IOTC(인도양다랑어위원회)에 제출된 우리나라의 저연승, 트롤의 어획자료가 SIOFA에 제출한 국가 보고서보다 어획량이 적게 보고된 것으로 파악. 이에 대해 자료보완 필요

- 2) 모리셔스: 국내 소규모 어업이 주류를 이루어 SIOFA 수역 내 주된 조업이 없으며, SIOFA 수역에서 조업한 외국적 트롤과 저연승 선박의 하역 모니터링을 수행 중(국가 보고서 없음)
- 3) 세이셸: 다랑어를 목표종으로 인도양 공해에서 조업하며 IOTC에 조업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그 외 어업은 주로 EEZ에서 조업하여 SIOFA 수역내 어업이 없음(국가 보고서 없음)
- 4) 호주 : 최대 트롤 3척에서 1척으로 감소하였으며, 주요 목표종은 rubyfish, blue-eye trevalla, 빛금눈돔, 오렌지라피, 카디날피쉬. 트롤은 2015년 조업이 없었으며, 저연승은 2008년 조업이 유일함
- 5) 일본 : 1975년부터 SIOFA 수역에서 조업을 하였으며, 빛금눈돔(트롤)과 파타고니아아미빨고기(저연승)를 주요 목표종으로 하고 있음
- 6) 쿡아일랜드 : 최대 5척의 선박이 입어하며, SIOFA 수역에 생물조사 및 음향조사를 수행하여 VME 분포, 음향조사를 이용한 자원평가 결과를 보고하였음
- 7) EU : 주요 조업국은 스페인이며, 1 ~ 2척의 저연승선박이 매년 조업하고 있으며, 상어(Portuguese dogfish)를 목표종으로 하는 자망어업은 2013 ~ 2015년간 조업 후 중단함
- 8) 프랑스 : SIOFA 수역 내 케르젤렌섬과 크로제섬의 프랑스 EEZ 해역에서 주로 저연승 조업함
- 9) 코모로스 : 주요 목표종인 다랑어 외 부수어획되는 어종과 어획량 보고하였으며, 저층어업은 없음

3. 자료 형식

■ 표준자료(의제 6)

- SIOFA 자료 형식을 SPRFMO(남태평양수산관리기구)의 과학자료 형식을 기준 모델로 제안
- 자료 표준, 교환 등에 대한 안건을 검토
 - ①조업활동 및 영향에 대한 자료 ②옵서버자료 ③VMS 자료 ④과거 조업자료 ⑤자료 검정 ⑥자료 교환 ⑦기밀성
 - 어업활동과 영향에 관한 자료 수집 측면에서 주로 논의하였으며, VMS 자료 등 기밀성과 관련한 자료는 논의되지 않음

* 당초 호주 제안서에는 자료 수집, 보고 및 교환에 관한 절차가 명시되어있었으나, 자료 기밀유지에 관한 규정 미비로 자료 보고 및 교환에 관한 논의 생략



- 과학위는 선박의 어획 및 노력량, 연간 어획량 및 옵서버 자료 형식을 당사국회의에 상정할 예정
 - * 양륙 및 전재 자료 형식과 관련하여 일본은 동 건은 당사국회의에서 논의되어야함을 주장 → 합의 미도출
- 과학위원회 회의는 매년 3월에 개최되나 전년도 어획자료는 5월 말까지 제출기로 합의

4. 자망 관련 보존관리조치

■ 임시 보존관리조치 검토(의제 10)

- 제2차 당사국회의('15. 3.) 결과, 과학위는 현행 심해자망 금지 결의문에 대해 검토
- 호주는 대형유자망 및 심해자망 사용을 금지하는 제안서 발의
 - 대형유자망 사용금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진 반면, 심해자망의 경우 일본*의 반대로 합의 미도출
 - * 일본은 사전예방적 접근법을 적용하는데 반대하고, 향후 심해자망에 관한 위험평가 시행 의향을 표명

5. 저층어업 관리방안

- 호주는 SPRFMO 조치를 준용하여 자국의 기존수역(footprint) 내에서만 저층어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안서 발의
 - * 동 제안서 채택시 우리나라를 포함한 조업국의 활동이 제한될 가능성 존재
- 과학위는 호주 제안서 이외 척수, 해상일수와 같은 어획노력량을 제한하는 방식도 검토하였으며, 차기 당사국회의에 동 건 보고 예정

6-2 제3차 당사국회의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남인도양수산협정(SIOFA) 제3차 당사국회의
SIOFA 3rd Meeting of the Parties
- 일시/장소 : 2016. 7. 3. ~ 7. 8(6일간), 프랑스령 레위니옹
- 의장 : Mr. Vasily Titushkin(러시아)

2. 참석규모

- 참가국 : 8개 당사국 및 옵서버 약 50명
- 대표단 규모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담당자, 해외수산협력원 국제수산협상전문관, 원양산업협회 담당자 등 3명

II. 주요 논의결과

1. SIOFA 초대 사무국장 선임

- SIOFA 초대 사무국장 선임을 위해 회기간 총 10명의 지원자 중 최종 후보 3인을 선발
- 무기명 투표 시행 결과, EU(영국) Lansley 후보자가 초대 사무국장에 최종 당선

2. SIOFA 수역 내 저층어업 관리(발의국 : 호주)

- **(조업수역 제한)** SIOFA footprint* 도입에는 당사국 간 합의가 형성되었으나, 저층조업을 국별 기준 조업수역 이내로 제한하는 임시조치에 대해서는 다수의 조업국이 반대

* 과학위는 각국이 제출한 조업실적을 통합, 기존 저층어업 수역에 해당하는 「footprint」지정하여 동 수역에서만 저층어업을 허용하는 공간 관리 조치

- 당사국은 금년 8월 「UN 공해저층어업검토회의」 대비, 저층어업 대신 저층트롤에만 적용하는 중 재안에 합의



- **(과학읍서버 승선율)** 트롤선 100%, 그 외 어선은 20% 읍서버 승선
- **(조업수역 설정)** 과학위는 체약당사국 및 협력적비회원국의 제출자료를 토대로 2019년 저층어업 footprint 권고

3. 자료 수집·보고·검증·교환 표준(발의국 : 호주)

- **(자료제출 원칙)** 각국이 통일된 방식에 따라 ①선박 위치 및 시각 ②어종 ③어법 ④어선종류 기재 방식 제안

항목별 자료제출 원칙

위치	- 세계측지계(WGS84) 좌표로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명시(예 : 0°00'36") - 북위 및 동경은 양수, 남위 및 서경은 음수로 표시
시각	- 예 : 2016년 6월 24일 오후 2시 10분 5초 → 2016-JUN-24T14:10:05
어종	- 「FAO 3자리 어종 코드」 사용
어선종류	- 「국제 표준 어선 분류 코드」 사용

- **(VMS 자료)** ①협약수역 내 모든 선박 ALC 장착 및 작동 의무화 ②트롤 혹은 EEZ경계 20해리 이내 선박의 경우 2시간, 그 외 4시간 주기로 기국에 선박 위치 전송
- **(양륙 및 전재 자료)** 호주는 선박이 양륙 및 전재에 관해 작성해야하는 서식을 마련하였으나, 일본의 비공식 요청*에 따라 관련 문구 삭제

* 양륙·전재 자료는 선박 이행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삭제 희망

4. 무국적 선박(발의국 : 호주)

- IOTC, SPRFMO(남태평양지역수산기구) 및 CCAMLR(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에서 이미 회원국 간 무국적 선박의 IUU어업 정보교류를 촉진하는 조치 채택
 - **(즉시 보고 의무화)** 협약수역 내 IUU어업에 연류된 것으로 판단되는 무국적 선박을 목시한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사무국 및 기국에 보고
 - **(장려 사항)** 각국은 무국적선의 IUU어업 방지 및 억제에 필요한 ①국내법 채택·집행 ②동 선박의 양륙·전재·항구서비스 이용 금지 ③비체약당사국의 법적·제도적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

5. 대형유자망 및 심해자망 사용(발의국 : 호주)

- 제1차 과학위원회 회의 결과, 대형유자망 사용금지에 관한 합의는 도출되었으나, 일본의 반대로 심해자망 관련 권고는 마련되지 않음
- **(대형유자망 사용금지)** 대형유자망의 경우 협정수역 내 사용이 금지되나, 심해자망은 과학위 권고 도출 전까지 미사용을 권고

6. 감시, 통제 및 감독 시스템(SYSTEM) 검토

■ IUU선박 목록

- 매년 SIOFA「IUU선박 목록」 채택을 위해 회기간, 하부위원회 및 당사국 회의 중 수행되어야할 일련의 절차 수립

IUU선박 목록 수립 및 채택 절차

- 각국은 매년 당사국회의 120일 전까지 IUU 의심선박 목록 제출
- 사무국은 당사국회의 90일 전까지 IUU선박 목록 '초안' 회람
 - 각국으로부터 수령한 추가 정보를 포함하여 당사국회의 3주전 IUU선박 목록 초안 재회람
- 이행위는 IUU선박 목록 초안 검토 후 '잠정' IUU선박 목록 당사국회의 상정
- 당사국회의에서 'IUU선박 목록' 최종 채택

- **(IUU어업 정의)** 「1995년 공해이행협정」 준거하여 무허가 어업, 어획량 및 노력량 한도 위반, 어획량 허위보고 등 총 10개의 구체적인 IUU어업 행위 명시
- **(RFMO IUU목록 연동)** 호주의 반대로 타 지역수산기구 IUU목록에 등재된 선박을 SIOFA 목록에 자동 등재시키는 조항 삭제

■ 조업허가 통보

- **(허가선 목록 통보)** SIOFA 조업허가선 기록부 수립을 위해 각국은 동 조치 발효(2016. 10. 9.) 전까지 협정수역 내 조업이 허가된 자국 선박 목록을 사무국에 제출
- **(변경 통보)** 각국은 SIOFA 조업허가선 기록부 기 등재선박 정보 변경 또는 신규선박 허가 시 15일 이내 사무국 통보

7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제13차 이행위원회 및 재정행정 회의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제13차 이행위원회 및 재정행정회의
13th Session of the Compliance Committee, 13th Session of the Standing Committee on administration and finance and 3rd Management Procedures Dialogue
- 일시/장소 : 2016. 5. 16. ~ 5. 21(6일간), 프랑스령 레위니옹
- 이행위원회 의장 : Mr. Herminio Tembe(모잠비크)

2. 참석규모

- 참가국 : 31개 회원국 및 옵서버 등 약 100명
- 우리나라 대표단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담당자, 해외수산협력원 국제수산협상전문관, 원양산업협회 담당자 등 3명

II. 회의결과

1. 어획능력 제한 이행

- 사무국은 2015년도 총 어선톤수가 기준년도(2006 및 2007년) 어선톤수보다 낮고, 개도국의 선단 개발이행계획서 제출이 저조함을 발표
 - 열대성 다량어류 어획능력(2006년 총톤수) : 58만 톤 / 2015년도 44만 톤
 - 황새치 어획능력(2007년도 총톤수) : 24천 톤 / 2015년도 11천 톤
- 일본은 우리나라의 기준연도 대비 최근 어선의 톤수 증가에 대한 이유를 질의, 우리나라는 태평양에서의 과도한 조업경쟁 완화를 위해 최근 인도양에 어선을 투입하였음을 답변
 - * 2015년 전년대비 연승선 5척, 선망선 1척 및 지원선 1척 추가 조업
 - ** 2014년 9월 우리나라는 국제선박톤수협약에 따라 아국 기준연도 어획능력 정정(15,274톤 → 23,002톤)

2. 국별 이행보고서 제출 촉구

- 2016년 26개 회원국 이행보고서* 제출, 7개국 마감기한 미 준수
 - * 이행보고서 제출 : 27개국(2013년) → 25개국(2014년) → 24개국(2015년)
- 이행위는 이행보고서를 미제출국*이 연례회의 종료 30일 이내 이를 제출할 것을 권고
 - * 벨리즈, 에리트레아, 기니, 인도, 시에라리온, 수단, 예멘, 방글라데시, 지부티

3. IUU조업 추가정보 검토

- (신규 IUU어선) 모잠비크는 당국의 허가 없이 자국수역에 입역한 무국적 연승선 1척(NAHMAM 4, 이전선명)의 잠정 IUU목록 등재 요청한 바, 이행위 등재 결정
 - * 검색결과 선내 어구발견, 로그북 미배치 및 선박표시(marking) 규정 미준수

4. 조치 위반 가능성을 지닌 BIOT* 통항 선박 보고

* BIOT(British Indian Ocean Territory) : 영국의 인도양 속령

■ 인도 국적선 검토

- 영국은 2015년 IOTC IUU목록에 등재된 9척*의 인도선박에 대해 기국 조치 부족한 점을 설명한 바, 이행위는 잠정 IUU어선 목록에 지속 등재키로 결정
 - * ①GREESHMA ②BOSIN ③BENAIHAH ④CARMAL MATHA ⑤DIGNAMOL 1 ⑥DIGNAMOL 2 ⑦KING JESUS ⑧ST MARY'S I ⑨ST MARY'S II

■ 스리랑카 국적선 검토

- 영국의 요청에 따라 이행위는 금지어구(자망) 및 참치류를 선내 보관하고, 벌금을 미납한 6척*의 인도 선박의 잠정 IUU어선 목록 등재 결정
 - * ①BEO HINGIS ②JOSHVA ③JOSHVA NO.1 ④SACRED HEART ⑤CACHANAM ⑥WISDOM

8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CCAMLR)

8-1

전자어획증명제도 워크숍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전자어획증명제도(e-CDS) 워크숍
- 일시/장소 : 2016. 7. 26. ~ 7. 29(4일간), 호주 호바트

2. 참석규모

- 참가국 : 11개 회원국, 협력적비회원국 등 약 20명
- 우리나라 대표단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담당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담당자, 해외수산협력원 협상전문관 등 4명

II. 주요 논의결과

1. 신규 전자어획문서제도(New e-CDS)

■ 신규 전자어획문서제도 변경 사항 설명

- **(접속 권한 일원화)** 현재 분할되어 있는 이빨고기 어획증명서(DCD) 및 이빨고기 수출·재수출증명서(DED·RDED) 접속 권한 일원화

* 현재 접속 권한 분할로 관리가 힘들고 각 증명서 간의 정보 연계성 부족

- **(DCD 항목 추가)** 이빨고기 어획증명서(DCD) 입력관련 6번(출항일)~7번(입항일) 항목 신설

* DCD 신청시 4~6(조업 시작, 종료 및 입출항 날짜 등) 및 11~12번(양륙 등) 은 선장이 직접 작성

- **(특별어획증명서관련)** 이빨고기 어획증명서(DCD)와 CVD(특별어획증명서) 발급 시 각각 1번부터 발급번호 부여하여 운영

* 현재 별도로 발급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발급번호로는 구분 불가

- 신규 전자어획문서제도(e-CDS)에 대한 우리측 요구사항
- (우리측 요구사항) 신규 전자어획문서제도에 대한 수정 권한 및 시스템상 기능 신설 요청
 - DCD 및 DED 등 발급 후 수정 권한 요청
 - 각 단계 완료시 Next버튼 신설 요청
 - 품목 중량 입력 시 총계기능 신설 요청
- (e-Group 개설) CCAMLR 웹페이지에 교육시스템(e-Group) 방 개설 요청
- (DCD 관련) DCD 품목입력칸 조정

2. 2014~2015 권고안 검토 및 논의

- DCD 및 DED 발급 시 기관장 서명 및 기관 도장(고무인) 삭제
- DED 발급 시 발급기관의 세부 명칭이 없어 등록 필요
 - * DED: (현재)R O KOREA → (변경)H O KOREA, NFQS(수품원)
- DED 발급 시 DCD의 데이터와 연계하여 수출량이 어획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e-CDS에서 자동계산 및 재고량 등 정보제공
- e-CDS관련 수출입 업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업체정보(대표자명, 주소 등) 최신화 및 실적이 없는 수출입 업체 삭제 등 정비
- 이빨고기 어획량 및 수출통계 등의 세분화된 자료(연도별, 해역별, 선박별, 품목별 등) 제공 예정
- 기국에서 DCD 발급 시 입력하는 주요 품목 및 기타품목 정리
 - * (주요품목) HAT 삭제(HGT와 중복), GAT 삭제(사용 실적 저조)
 - * (기타품목) OTH 품목을 4개(heads, tails, cheets, collar)로 축소 정리
- 현재 e-CDS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빨고기류(Disostichus spp.) 통계를 품종별(TOP, TOA)로 세분화하여 제공
 - * 통계제공 : (현재) Dissostichus spp. → (변경) TOP(Dissostichus eleginoides), TOA(Dissostichus mawsoni)
- e-CDS 시스템에 VMS 및 항만국 시스템을 링크하여 IUU어획물 DCD 발급 사전 차단
- 조업선박 총 어획량의 투명한 이력관리를 위해 여러 선박에 분할하여 해상전재 시 동일 조업선박에서 전재했음을 알 수 있도록 발급번호 부여
 - * (현재) 1건의 동일한 문서번호로 DCD 발급하여 사용 → (변경) 다수의 해상전재에 대하여 각각 발급



- DCD발급 시 수령인이 다수일 경우 각각의 DCD로 발급
- DED 14번(수입부문) 하역의 정의가 회원국마다 차이가 있어 이를 도착하는 도시 또는 항구로 수정
* (현재) Point of unloading city → (변경) Place of arrival city or port

8-2

제35차 연례회의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제35차 연례회의
35th Meeting of the Commission
- 일시/장소 : 2016. 10. 17. ~ 10. 28(12일간), 호주 호바트
- 의장 : Mr. Vasily Titushkin(러시아)

2. 참석규모

- 참가국 : 25개 회원국 및 옵서버 약 200명
- 대표단 규모 :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 및 국립수산과학원 담당 외 8명

II. 주요 논의결과

1. 2016 ~ 2017 어기 조업승인

- 우리 측의 크릴 시험어업 3척 및 이빨고기 조업선 총 5척이 신청한 조업계획은 과학위의 검토를 거쳐 총회에서 승인

2. 해양보호구역(MPA) 지정

■ 동부해역 MPA(호주, EU, 뉴질랜드) : 총 면적 축소(4개소 → 3개소)

- 과학위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는 MPA 내 조업제한·금지·관리 요구사항 결정

* 조업활동이 MPA 목적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타겟 어종 포함 남극해양생물자원 현황 및 추세 평가, 조업 영향평가, MPA에 대한 조업의 잠재적 영향 평가 등

- MPA 내 조업 시 CCAMLR 과학 옵서버 제도에 따라 임명된 옵서버 1인 포함 옵서버 2인 승선 의무화



- MPA 내 조업 및 과학조사 시 ①입역날짜 ②어획노력·생물학적 데이터 및 보존관리조치 이행 평가의 일환 ③활동결과 보고

* ①②: 사무국 보고, ③: 과학위 보고

- 논의 결과, 러시아와 중국의 강한 반대로 남극해 동부 MPA대표체계 제안서 채택 무산

■ 로스해 MPA 설정 제안서 채택(미국, 뉴질랜드 제안)

- MPA는 다음과 같이 3개의 구역으로 나뉘며, 구역별로 상이한 조업 제한방식 도입

- (일반 보호구역) 시험조업을 금지하며 과학조사만 허용

단, 이빨고기류 5톤 초과하여 과학조사 수행시 과학위 및 위원회 승인 필요

- (특별과학조사구역: SRZ) 이빨고기류 조건부* 직접 조업 허용

* 어획한도를 88.1/88.2 A-B 소해구 어획한도량(3,663톤)의 15%로 제한(단, 전년도 미어획량 이월가능), 이빨고기 1톤당 최소 3미 태깅

- (크릴연구구역) 2015년 연례회의중 미·중간 합의에 의해 신설되었으며, 현행 크릴 시험조업 보존조치에 따라 일반 크릴조업 허용

- 회원국은 만장일치로 로스해 구역을 향후 35년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본 제안서 채택

■ 웨델해 MPA 설정 제안서 논의(EU 제안)

- 웨델해 MPA내 전채 및 폐기물 해상투기를 금지하며, 3가지 조업제한 구역을 지정하여 구역별로 상이한 조업 제한방식 도입

- (GPZ: 일반보호구역) 해양생태계 및 대표 생물종 보호, 기후변화 영향 파악, 과학조사 수행을 위해 이빨고기 과학조사(5톤/1년) 외 모든 조업금지(어구사용 제한 없음)

- (SPZ: 특별보호구역) 특이·희귀 생물종 및 서식지 보호, 장기적 기후변화 적응력 파악을 위해 모든 조업활동 전면 금지(해저에 물리적으로 접촉하는 towed gear 사용금지)

- (FRZ: 어업연구구역) 연승어업이 장기적으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이빨고기 시험어업과 과학조사만 허용

- 본 제안서에 대한 과학위의 권고사항 부재로 러시아와 노르웨이에서 반대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웨델해 MPA 제안서 채택 무산

3. 비회원국의 어획증명제도 참여 제고(호주)

- 회원국(수입국 등)이 NCP(비회원국)가 압류한 불법 이빨고기 판매를 위한 특별어획증명서(SVDCD) 대리 발급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시 NCP가 취한 조치, 압류에 대한 국내법적 근거, 유관 기관 정보를 제출
- 논의결과, 비회원국으로 하여금 CCAMLR의 어획증명제도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으로서 동 제안서를 채택하기로 합의

4. 크릴 보존조치 강화(칠레, 우크라이나 각 1)

- **(칠레 제안서)** 현행 이빨고기 보존조치와 크릴 보존조치간 감시감독통제(MCS) 수단 등 균형이 맞지 않아 크릴 보존조치 강화필요성 제안
- 중국은 크릴과 이빨고기 시범조업에 있어, 두 어종간 시장가치 및 관리방법이 다르므로 동일한 오피서버 커버리지 수준을 적용하기 어려움을 언급하여 차년도 회의에서 추후 논의키로 함
- **(우크라이나 제안서)** 크릴어업에 대한 과학자료 정밀성 향상 및 보존조치 이행 강화 등을 위해 오피서버 의무승선율(커버리지) 100%로 상향
- 논의결과, 크릴어업의 오피서버 커버리지는 현재 92%임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오피서버 커버리지를 100%로 상향하기로 결정

* 2016/17 ~ 2017/18: 50%, 2018/19 ~ 2019/20: 75%, 2020/21 ~: 100%

9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이행위원회 제4차 작업반 회의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이행위원회 제4차 작업반 회의
- 일시/장소 : 2016. 4. 5. ~ 4. 7(3일간), 호주 캔버라

2. 참석규모

- 참가국 : CCSBT회원국,옵서버 등 약 40여 명
- 대표단 규모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담당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담당, 해외수산협력원 국제협상전문관 등 3명

II. 주요 논의결과

1. 어획증명제도(CDS) 이행결의 개정 합의 사항

- **(전자CDS 근거 마련)** CDS 문서개념에 종이문서는 물론 CCSBT 웹을 통해 생성한 전자문서(documentation) 및 증명서(certificate) 포함
- **(offloading용어 신설)** SBT조업선 또는 축양장으로부터 SBT 제품을 최초로 하역하는 모든 경우*를 지칭
 - * ①자국에서 포획한 SBT 양륙(반입) ②수출국 SBT 양륙 ③보세창고에 SBT 장치 ④양상 및 입항 전제 ⑤축양장에서 SBT 수확
- **(원어 정의)** 필렛(FIL) 혹은 로인(LOI) 등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SBT 제품을 원어(whole SBT)에 포함
- **(태그 부착시기)** 반입된 SBT 원어 첫 판매 시점까지 태그 부착을 의무화하고, 그 이후에는 태그 부착을 장려
- **(CDS문서 보고 주기)** 각국은 CDS 발급 및 수령 내역을 현행과 같이 분기별로 사무국에 보고
- **(CDS문서 명칭 변경)** 개별 CDS 문서 명칭을 서식(format) → 증명서(certificate)로 일괄 변경기로 합의

어획증명서(DCS)현행	개정
양식장 입식양식(FSF) <Farm Stocking Form>	양식장 입식증명서(FSC) <Farm Stocking Certificate>
양식장 이전양식(FTF) <Farm Transfer Form>	양식장 이전증명서(FTC) <Farm Transfer Certificate>
어획 모니터링 서식(CMF) <Catch Monitoring Form>	어획/수확 및 수출 결합증명서(CHEC) <Combined Catch/Harvest/Export Certificates>
재수출/국내제품양육후 수출 서식(REEF) <Re-Export/Export after landing of domestic product Form>	수출증명서(ExC) <Export Certificate>
어획태그 서식(CTF) <Catch Tagging Form>	어획태깅증명서(CTC) <Catch Tagging Certificate>

- **(수정·취소 보고)** 종이로 된 CDS 문서를 수정/취소한 경우 발행국 및 수령국 모두 분기별로 사무국에 보고
- **(승인권자 변경 등)** 각국은 CDS 문서 승인권자에 관한 정보를 사무국에 제공하고, 관련 정보 변경시 15일 이내 통보
 - 우리측 제안으로 승인권자 변경 내역 CCSBT 웹사이트 게재 합의

2. 어획증명제도 서식 개정 검토

- 논의 결과
 - 5건의 어획증명제도 서식 중 FTC(양식장 이전 증명서) 및 CTC(어획물 태깅 증명서) 개정에 잠정 합의



- FSC(양식장 입식 증명서), CHEC(어획/수확 및 수출결합증명서) 및 ExC(수출증명서) 개정안은 회원국간 이견으로 일부 미합의

* 2016. 10월 제11차 이행위원회 대비 CCSBT 사무국 중재로 회기간 협의 추진

3.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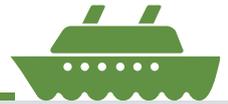
- 2016년 QAR(이행감사) 계획 보고
 - 한국 및 뉴질랜드의 남방참다랑어 관리시스템(쿼터 할당 관리, 전재, 양륙확인), 어획증명서 이행·발급 관련 현장실사 추진사항 보고
- 비회원국 SBT 시장조사 경과 보고

Korea-Viet Nam FTA Negotiation
- MOTIE -
Level 3, Conference Room
Board Room
Meeting Room 2
Gyeongdaemun 2



5th Round of Korea-Viet Nam FTA Negotiation
Seoul, 20~23 May 2011





제3장 통상

1. 한-이스라엘 FTA 협상	
1.1 한-이스라엘 FTA 제1차 협상	74
1.2 한-이스라엘 FTA 제2차 협상	75
2. 한-중미 FTA 제3차 협상	76
3. 한-에콰도르 SECA 협상	
3.1 한-에콰도르 SECA 제1차 협상	77
3.2 한-에콰도르 SECA 제2차 협상	78
4. TPP 대비 양자 기술협약-호주	79
5. 뱀장어 자원관리 및 보존을 위한 제9차 비공식 회의	80
6. 국제포경위원회(IWC) 제66차 총회	81



1

한-이스라엘 FTA 협상

1-1

한-이스라엘 FTA 제1차 협상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한-이스라엘 FTA 제1차 협상
- 일시/장소 : 2016. 6. 27. ~ 6. 30(4일간), 서울

2. 참석규모

- 우리나라 대표단 : 산업부 FTA정책관(수석대표) 외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 담당자(협력원 국제통상전문관 참석)
- 이스라엘측 대표단 : 경제산업부(수석대표), 금융부,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예상 경제효과

-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체결시, 관세인하 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 완화 등을 통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소비후생 추가 증대효과 예상
- *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대효과: 0.01~0.06%, 소비자 후생 증가: 0.83~7.2억 달러

2. 시장접근

- 양측은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이 본 협상의 목표라는 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양허 카테고리 설정 등 상품 양허 방식 협의

3. 원산지

- 협정문 초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설명하는데 중점을 맞추어 1회독 완료

1-2 한-이스라엘 FTA 제2차 협상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한-이스라엘 FTA 제2차 협상
- 일시/장소 : 2016. 12. 11. ~ 12. 15(5일간), 예루살렘

2. 참석규모

- 우리나라 대표단 : 산업부 FTA정책관(수석대표) 외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 담당자(협력원 국제통상전문관 참석)
- 이스라엘측 대표단 : 경제산업부 국제협정 심의관(수석대표), 경제산업부, 금융부,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시장접근

- 상품 양허협상을 개시하며 양측의 핵심 관심품목에 대한 상호 기대수준 파악

2. 원산지

- 완전생산기준, 누적 등 주요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상호이해를 제고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합의 추진
 - 배타적경제수역 내 어획수산물 관련, 기국주의 입장 견지



2

한-중미 FTA 제3차 협상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한-중미 FTA 제3차 협상
- 일시/장소 : 2016. 2. 22. ~ 2. 26(5일간), 샌프란시스코

2. 참석규모

- 우리나라 대표단 : 산업부 FTA정책관(수석대표) 외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 담당자(협력원 국제통상전문관 참석)
- 중미측 대표단 : 중미 6개국 수석대표 및 관계부처 담당자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시장접근

- 양측 양허안을 토대로 R/O 협상 진행
 - 중미측 2차 양허안의 자유화수준이 우리 2차 양허안 대비 여전히 보수적인 바, 중미측 양허안 개선을 지속적으로 강하게 요청

2. 원산지

- 불인정공정, 누적, 직접운송 등 주요 쟁점으로 확인된 사항을 중심으로 양측의 제도 및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도 제고
 - PSR 협상 관련, 양측은 한 4,246개 품목(중미측 미확정 959개 품목 제외)에 대한 PSR 초안을 교환한 바, 잔여 품목에 대한 교환 및 본격적 논의

* HS 6단위 5,205개 품목 중 양측 동일 932개, 차이 3,314개, 미교환 959개

3

한-에콰도르 SECA 협상

3-1

한-에콰도르 SECA 제1차 협상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한-에콰도르 SECA 제1차 협상
- 일시/장소 : 2016. 1. 26. ~ 1. 28(3일간), 키토

2. 참석규모

- 우리나라 대표단 : 산업부 FTA정책관(수석대표) 외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 담당자(협력원 국제통상전문관 참석)
- 에콰도르측 대표단 : 대외무역부 통상협상차관보(수석대표) 및 관계부처 담당자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시장접근

- 상품 양허 협상 개시를 위한 제반 사항 협의
 - 목표 자유화 수준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상품 양허 모델리티(협상방식, 양허방식 및 관련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한 합의 추진
 - * 자유화를 평가기준, 기중세율, 관세철폐 방식 대상 시점, 양허 카테고리 등

2. 원산지

- 원산지 협정문 전반에 걸쳐 각 조항에 대한 양측 입장 차이가 상당한 바, 양측 입장 설명 및 이해도 제고에 총력을 기울임
 - 원산지 규정, EEZ 인정 범위, 기국주의, 역내 부가가치 등 다양한 쟁점이 도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미합의

3-2 한-에콰도르 SECA 제2차 협상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한-에콰도르 SECA 제2차 협상
- 일시/장소 : 2016. 3. 14. ~ 3. 18(5일간), 서울

2. 참석규모

- 우리나라 대표단 : 산업부 TPP대책단 단장(수석대표) 외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 담당자(협력원 국제통상전문관 참석)
- 에콰도르측 대표단 : 대외무역부 통상협상차관보(수석대표) 및 관계부처 담당자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시장접근

- 예측 수입쿼터d(IQ) 제안서 요구 및 양허안 관련 논의
 - SECA 타결 전제로 예측 수입쿼터 조치의 철폐 또는 대안(시장접근 개선 보장)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양측의 자유화 수준 관련 논의

2. 원산지

- 영해 범위, 미소기준, 불인정 공정 등 주요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양측의 제도 및 상황을 설명하고 입장 차이 해소에 총력을 기울임
 - 우리측은 EEZ내 어획한 수산물에 대한 기국주의 적용을 주장한 반면, 예측은 연안국주의를 고수하여 합의 도출에 실패
- 양측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대한 초안을 3차 협상 전에 교환하고 3차 협상부터 본격적인 논의 개시를 제안

4

TPP 대비 양자 기술협약-호주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TPP 대비 양자 기술협약
- 일시/장소 : 2016. 8. 24(수), 캔버라

2. 참석규모

- 우리나라 대표단 :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 과장, 주호주 대사관 참사관, 해외수산협력원 국제통상전문관
- 호주측 대표단 : 외교통상부 및 농림수산부 담당자 10여 명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 TPP 비준 예상시기, 금지대상 수산보조금, 호주의 수자원 관리제도 등 TPP 협정문의 이해 제고와 추진현황 파악

2. 수산보조금

- 호주 수산보조금 현황 및 유관 정책 검토
 - 호주는 수산보조금 금지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국가로서 호주의 자원관리 제도 등 벤치마킹 사항 파악

5

뱀장어 자원관리 및 보존을 위한 제9차 비공식 회의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뱀장어 자원관리 및 보존을 위한 제9차 비공식 회의
- 일시/장소 : 2016. 9. 6(화), 도쿄

2. 참석규모

- 우리나라 대표단 :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 양식산업과, 국립수산과학원, 해외수산협력원 국제통상전문관
- 일본 및 대만 대표단 10여 명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1. 동산 뱀장어 CITES 등재 대비

- 뱀장어 자원관리 및 보존 방안 논의, 각 국가의 실뱀장어 입식량, 수출입 통계 등 공유, 차기 동물 위원회 및 CITES 의제 대응 방안 논의 및 차기 비공식 회의 일정 및 의제 설정
 - 제7차 뱀장어 자원보존을 위한 비공식회의에서 논의한 실뱀장어 입식량 기준에 부합하였음을 확인
 - 뱀장어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해 설명 및 향후 동법과 제도의 추진 경과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

6

국제포경위원회(IWC) 제66차 총회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국제포경위원회(IWC) 제66차 총회
- 일시/장소 : 2016. 10. 23. ~ 10. 28(5일간), 포르토로즈

2. 참석규모

- 우리나라 대표단 :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 통상무역협력과, 고래연구센터,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외수산협력원 국제통상전문관
- 88개 IWC 회원국 및 NGO 등 약 500여 명 참석

II. 주요의제 논의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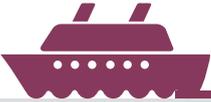
1. 결의안

- IWC 기구 효율성 제고, 남대서양 고래 보호구역 설정, 과학조사포경 절차 개선, 식량안보, 빈국의 IWC 참석기금 조성, 고래류의 생태계 기여 연구 촉진, 고래류 중금속 오염 연구, 멸종위기 바키타 보호에 대한 결의안 표결

2. 귀신고래 서부계군 보존 제안서 서명(세계자연보전연맹)

- 멸종위기인 귀신고래 서부계군의 보존을 위해 서식권 국가들의 공동행동과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요청하여 미국, 러시아, 일본, 멕시코가 참석한 가운데 MOU 서명식 개최





부록 국제옵서버 교육

1. 2016년 상반기 옵서버 정기교육	84
2. 2016년 하반기 옵서버 정기교육	86
3. 제8차 국제 옵서버·모니터링 컨퍼런스	89





Korea-Viet Nam FTA Negotiation
- MOTIE -
Joint J-V Conference Room
Meeting
Chairperson's Office
May 7, 2014

MEETINGS

Group (OFWG) Meeting
9-12 MAY 2014

REPUBLIC OF KOREA

OSTA RICA

Chairperson

1

2016년 상반기 오피서버 정기교육

I. 교육개요

1. 교육개요

- 교육명 : 2016년 상반기 오피서버 정기교육
- 일시/장소 : 2016. 4. 7. ~ 4. 8(2일간), 서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2. 참석자

- 교육강사 :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 이재봉, 한국청렴윤리연구소 원장 이지영,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팀장 김성용
- 참석자 : 오피서버, 국립수산과학원, 해외수산협력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총 27명

II. 세부내용

1. 목적

- 오피서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지식 습득
- 오피서버 공적기능 강화를 위한 도덕, 윤리 의식 강화
- 해양생물자원 관리의 중요성 및 오피서버의 필요성 인식 제고

2. 내용

- 주요 국제수산기구 보존관리조치의 최신동향
 - 보존조치 및 이행사항의 최신 변경 사항
 - 오피서버 관련 주요내용 검토 및 점검
- 공익적 기능수행을 강화하기 위한 오피서버의 청렴한 직업의식 자세
 - 오피서버는 선박에서 장기간 선원들과 밀접한 관계에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바, 선박과의 유착관계 형성 가능
 - 공익적 기능수행 측면에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청렴한 직업의식 필요



- 읍서버 보고서 및 자료 작성법과 보고 방법
 - 읍서버들간 자료의 취급과 보고의 통일성을 통한 읍서버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 해양생물자원의 중요성
 - 해양어류의 동정 분류 및 표본 관리 절차 및 해양자원 보호와 관리의 중요성

3. 기대효과

- 읍서버들의 주요 국제수산기구 보존관리조치의 최신동향 숙지
- 읍서버의 청렴한 직업의식 향상
- 읍서버 보고서 및 자료 작성법과 보고 능력 향상
- 해양생물자원의 중요성 재인식



2

2016년 하반기 읍서버 정기교육

I. 교육개요

1. 교육개요

- 교육명 : 2016년 하반기 읍서버 정기교육
- 일시/장소 : 2016. 10. 27. ~ 10. 28(2일간),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

2. 참석자

- 교육강사 :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 이재봉, 前전남도 수산자원과장 최갑준, 전경일 코치(생존수영)
- 참석자 : 읍서버, 해양수산부, 해외수산협력원, 국립수산과학원, 원양업계 등 총 31명

II. 세부내용

1. 목적

- 읍서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평가제도 개선 방안 마련
- 읍서버 청렴의식 제고를 통한 공적 기능 강화
- 생존수영 교육을 통한 비상상황 대처법 훈련
- 국제 읍서버 컨퍼런스(IFOMC) 참석 결과보고 및 읍서버간 업무 교류
- 간담회를 통한 업계의 읍서버 업무 협조 도모

2. 내용

- 읍서버 평가제도 개선(안)
 - 평가 항목 및 지표를 세분화하여 보다 정량적인 평가를 통한 읍서버 업무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강화
- 읍서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안)
 - 목적 : 읍서버 승선조사 중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해결을 통한 건강하고 효율적인 읍서버 프로그램 정착



- 근거 :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지역 옵서버 프로그램 표준에서 옵서버 분쟁조정을 위한 기구를 마련할 것을 권고(참고)
- 분쟁조정절차(안) : ①신청서 제출 및 접수 → ②답변서 요청 → ③답변서 접수 및 조정부 구성 → ④조정부 협의를 통한 조정안 제시 → ⑤조정결정 확정(당사자 수락)
-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청렴교육
 - 옵서버의 업무 성격상 공무수행인으로 간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적용 대상
 - 사례분석을 통한 청렴의식 제고
- 해상 근무중 발생가능한 비상상황에 대비한 생존수영 훈련
 - 인명구조 수영법,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 안전장비 사용법 등

3. 기대효과

- 소통을 통한 옵서버 제도 개선 방안 모색
 - 옵서버 프로그램 관계자와 옵서버의 폭넓은 소통을 통해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
- 옵서버 안전 확보 강화
 - 해상에서 근무하는 옵서버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
 - 생존수영 훈련을 통해,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 배양



Agreed Minimum Standards and Guidelines of the Regional Observer Programme	
Item	Standard Required
<p>Authorization Process</p> <p>Authorization process is the standards required to obtain interim and full authorization to be part of the ROP.</p> <p>The process of gaining full authorization is to be carried out following an audit of the programme to ensure that standards are in place or are being developed</p>	<p>The Secretariat will authorize national observer programmes, rather than individual observers, this is consistent with the Convention text. CMM-2007-01 Para 12(b) also states that the Secretariat will authorize observer providers. <i>WCP/ROP/2/TC/4/WCPFC/CS</i></p>
	<p>ROP expectation on the authorisation process.</p> <p>Before auditing takes place the programme will have been interim authorised by the Secretariat according to the rules and standards as adopted by the Commission.</p> <p>This will necessitate all programmes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pply manuals and guides to the Secretariat ▪ Nominate a National ROP Observer Coordinator ▪ Supply lists of all current observers ▪ Supply an official letter requesting ROP inclusion. <p>Refer <i>WCP/ROP/2/TC/4/WCPFC/CS</i></p>

(참고, WCPFC Regional Observer Program Standards updated 2016- “Dispute Settlement”)



3

제8차 국제 옵서버·모니터링 컨퍼런스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8차 국제 옵서버·모니터링 컨퍼런스
8th International Fisheries Observer & Monitoring Conference
- 일시/장소 : 2016. 8. 29. ~ 9. 2. 미국 샌디에이고

2. 참석규모

- 참가국 : 31개국 옵서버 관계자, 국제기구, 옵서버 등 약 250명
- 우리나라 참석자 : 국립수산과학원 원양자원과 담당자, 해외수산협력원 옵서버관리관, 옵서버 2명

II. 주요 내용

1. 각국의 옵서버 프로그램 현황

- 미국 옵서버 프로그램
 - 11개의 지역 옵서버 프로그램에서 53개 어업에 대해 900여 명의 옵서버가 79,000일의 해상 조사일 수 달성
 - 옵서버 프로그램 관련 연방정부의 연간 예산 43백만 불(약 482억 원)
- 뉴질랜드 옵서버 프로그램
 - 1986년 옵서버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으며 2015년 '직장 안전보건법(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2015)'이 시행됨에 따라 옵서버 프로그램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2. 옵서버 안전 강화

- 옵서버 성범죄 예방교육(미국)
 - 미국 수산청 내에 부설 해경사무소(OLE, Office of Law Enforcement)가 있으며 이 해경들은 옵서버 안전을 위한 검사 및 교육을 실시
- 옵서버에 대한 위험요소 감소방안(태평양 제도)

- 태평양 제도의 경우 다랑어연승선이 다수 조업중으로 어업허가 이전에 선박 안전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
- 옹서버 안전 및 보안을 위한 기준 강화(WCPFC)
 - **(옹서버의 해상 안전)** 옹서버에게 독립된 양방향 위성 통신장비와 개인용 조난표지 장비를 지급토록 함
 - **(비상행동계획)** 옹서버 안전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한 비상행동계획을 수립·비치토록 함

3. 전자 모니터링(EM)

- 미국 EM의 개요 및 계획
 - 미국 수산청은 2005년부터 지금까지 22백만 불(약 240억 원)의 예산으로 5개의 어업에 대해 50건의 EM연구를 실시
 - 현재 5개 어업에서 시행중인 EM을 향후 3년 이내에 8개 어업에 추가로 시행할 예정(2016년 예산 7 백만 불)
- EU의 어업정책 강화에 따른 EM 도입
 - 2014년 새로운 어업정책(CFP, European Common Fisheries Policy)을 도입함에 따라 모든 어획물은 선내 보유해야하고(폐기금지), 정보를 기록하여 해당 쿼터에 맞게 양륙해야함
 - 폐기금지 이행 관리를 위해 비디오 기반의 EM 조사를 실시, EM은 투명하고 효과적이고 비용효율적이며 위험도가 낮음



2016 해외수산협력원
국제수산업협상 연간 백서

발행처 해외수산협력원
발행일 2016년 12월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53 에스빌딩 6층
전화 044-868-7362
인쇄디자인 크리커뮤니케이션(02-2273-1775)

